

현안분석 2012-08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최승환 · 박언경 · 이상모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2-08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최승환 · 박언경 · 이상모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Trade Dispute Settlement under FTAs :
Legal Issues and Case Studies

연구자 : 최승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hoi, Seung-Hwan
박언경(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Park, Eon-Kyung
이상모(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원)
Lee, Sang-Mo

2012. 10. 1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가속화 현상은 WTO 협정과의 조화와 충돌의 문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FTA의 확대경향은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가간 통상분쟁의 발생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음.
- FTA에서는 체결국가간 발생하는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제도이외에 자체 분쟁해결제도도 도입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FTA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재는 국가의 통상이익이 훼손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임.
- 본 연구는 FTA 중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NAFTA 분쟁해결사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FTA 추진정책에 있어 쟁점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FTA는 GATT 및 WTO 협정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GATT 1994 제24조, GATS 제5조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음. 하지만 FTA 관련 WTO 규범 내용의

불명확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충돌가능성이 있음.

- FTA를 체결하고 있는 WTO 회원국들은 이론상 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임.
- NAFTA에서는 이와 반대로 NAFTA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의 경우 여타의 FTA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NAFTA는 양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NAFTA 분쟁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문제, 협정상의 의무충돌 및 해결문제, NAFTA 제도 자체의 특징, 분쟁해결방식에서 규범지향적 방식과 화해지향적 방식의 병존 등이 나타남.
- NAFTA는 타 FTA와 달리 NAFTA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이는 양자 간 분쟁해결방식을 선호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역내국가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유사성으로 인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됨.
- NAFTA 분쟁에서 발생하는 협정상의 의무충돌을 해결함에 있어, NAFTA 규정에 의한 독자적인 해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원용된 접근법 및 해석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

- FTA에서는 WTO에 비해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은 강대국에게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FTA는 양국 또는 소수국가들 사이에 공동의 이익실현을 위해 체결된 것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의 지향이라는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할 것임.
- 지역주의의 활성화는 다자주의체제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통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와 조화를 실현하는 것은 FTA 정책의 핵심 과제라 할 것임.
- 자체 분쟁해결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NAFTA 체제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들도 파편화 현상을 투영하고 있음.
- 그러나 NAFTA 분쟁에서도 국제무역규범의 조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WTO 협정과 NAFTA의 상호충돌을 방지하고 있음. 이는 명시적인 규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NAFTA 패널의 결정이유에서 WTO 협정의 해석법을 원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화를 시도하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소개한 NAFTA 분쟁사례를 통해 미국의 통상 분쟁에 접근하는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논리전개를 분석·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나라

라와 미국과의 통상분쟁에서 FTA 무역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임.

- ▶ 주제어 : 북미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WTO 협정, GATT 제24조, WTO 분쟁해결제도, 무역분쟁, 파편화, 조화.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Free Trade Agreements(FTAs) connotes two problems between FTAs and WTO Agreement: Conflict and harmonization.
- Although the current proliferation of FTAs around the world ma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market opening and trade liberalization, there remain potential trade disputes between States.
- Apart from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TAs adopt their own procedures that may be applied to trade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 lack of full understanding of those procedures might result in impairing trade interests.
- Based on the case study under the NA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which has been used actively than any other FTA, this report is aimed to propose effective FTA polic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II. Main Contents

- GATT 1994 Article 24 and GATS Article 5 recognize the conclusion of FTAs as an exception of the most-favored-nation (MFN) treatment, the basic legal principle under the GATT 1994 and WTO Agreement. Imprecision and ambiguity of WTO articles regarding FTA may, however, create conflicts between FTA and WTO Agreement in its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 Although parallel application is also available, the members, in practice, prefer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o FTA procedure.
- Unlike the general practice, NAFTA has taken up a positive and favourable attitude toward NAFTA dispute resolution. As compared with other FTAs which require the parties to bring trade disputes regard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to WTO dispute settlement body, NAFTA allows the contracting parties to bring them to FTA or WTO dispute settlement body.
- The research for NAFTA cases shows the coexistence of rule-oriented approach and power-oriented approach (or, ‘diplomacy approach’) with regard to the choice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conflicts of obligations and their resolution, the distinct feature of NAFTA rules,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
- NAFTA much depends on its own dispute settlement rules, as other FTAs do not. One reason is considered as reflection of the

U.S. preference for bilateral dispute resolution, and the other for rapid dispute resolution, due to the simila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among inter-American countries.

- Resolving the conflict of obligations under NAFTA rules, NAFTA has been in pursuit of harmonization with WTO rules. In other words, NAFTA panels have tried to find a solution not only by applying the rules of NAFTA, but also by referring to WTO rules and cases.
- Comparing to WTO Agreement, FTAs are apt to introduce power-oriented dispute resolution. Even though power-oriented dispute resolution, in general, is considered to be favorable for the powers, FTAs are more useful on the ground that the purpose of FTAs is to boost common interests of two or a few more countries and to promote swifter dispute settlement.
- Promoting regionalism looks like a double-edged sword: one side fostering multilateralism, the other causing increase in trade conflicts. This shows that a cardinal assignment of Korean FTA policy should be a harmonious operation with the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 It is not difficult to find out the fragmentation from a range of cases under NAFTA rule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among inter-American countries.
- NAFTA panels, however, have tried to harmonize the international trade norms and to prevent conflict between WTO Agreement and NAFTA. Though explicit rules on this are not laid down on the

NAFTA, NAFTA panels have repeatedly referred to the jurisprudence of WTO.

III. Expected Effect

- This research on NAFTA cases, introduced the policy approach and the reasoning of the U.S. as to trade disputes, and policy proposals under this report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gainst FTA disputes or the effective settlement of trade disputes.

➤ **Key Words : NAFTA, FTA, RTA, WTO Agreement, GATT ART. XXIV, WTO DSU, trade dispute, fragmentation, harmonization.**

목 차

| | |
|-------------------------------------|----|
| 요 약 문 | 5 |
| Abstract | 7 |
| | |
| 제 1 장 서 론 | 15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
| | |
| 제 2 장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특징 및 현황 | 19 |
| 제 1 절 FTA의 의의 및 현황 | 19 |
| 1. FTA의 의의 | 19 |
| 2. FTA의 현황 | 21 |
| 제 2 절 FTA 분쟁해결제도 | 32 |
| 1.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32 |
| 2. FTA 분쟁해결제도의 관할권 | 33 |
| 3. FTA 관련 무역분쟁의 현황 | 34 |
| | |
| 제 3 장 NAFTA 분쟁해결제 | 39 |
| 제 1 절 분쟁해결절차 | 39 |
| 1. 개 관 | 39 |
|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 | 42 |
| 3.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 | 46 |
| 제 2 절 이행절차 | 50 |

| | |
|--|-----------|
|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 50 |
| 2.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의 이행 | 50 |
| 제 4 장 NAFTA 분쟁사례 분석 | 53 |
| 제 1 절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분쟁사례 | 53 |
| 1.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 - Tariffs applied by Canada to Certain U.S.-origin Agricultural Products | 53 |
| 2. 세이프가드 무역구제 분쟁 - U.S. Safeguard Action taken on Broom Corn Brooms from Mexico | 56 |
| 3. 서비스 무역분쟁 - Cross-border Trucking Services | 62 |
|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 분쟁사례 | 65 |
| 1. 연목 분쟁 | 65 |
| 2. HFCS 분쟁 | 75 |
| 제 3 절 NAFTA 분쟁사례의 특징 | 78 |
| 1.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 78 |
| 2. 협정상 의무의 충돌과 해결 | 80 |
|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재심절차의 도입 | 82 |
| 4.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과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의 병존 | 83 |
| 제 5 장 FTA 관련 무역분쟁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 | 85 |
| 제 1 절 분쟁유형별 정책적 대응방안 및 시사점 | 85 |
|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관련 분쟁해결 | 85 |
| 2. 환경 등의 특별분야의 분쟁해결 | 87 |
| 제 2 절 분쟁해결절차별 정책적 대응방안 및 시사점 | 88 |
| 1. 관할권의 선택 | 88 |

| | |
|------------------------------------|-----|
| 2. 협의절차 | 90 |
| 3. 공동위원회 제도 | 92 |
| 4. 패널절차 | 93 |
| 5. 이행절차 | 95 |
| | |
| 제 3 절 FTA 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과 시사점 | 98 |
| 1.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도입의 중요성 | 98 |
| 2.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효용성 | 99 |
| 3.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효용성 | 102 |
| 4. 분쟁해결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104 |
| | |
| 제 4 절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 현상과 시사점 | 106 |
| 1. FTA 분쟁에서 나타나는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 | 106 |
| 2. FTA 분쟁에서 나타나는 국제무역규범의 조화 | 108 |
| | |
| 제 6 장 결 론 | 111 |
| | |
| 참 고 문 헌 | 117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체제 보다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92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출범과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 추진은 우리나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 +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즉, FTA의 체결로 인해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FTA의 체결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간 통상 분쟁의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내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시장개방은 오히려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존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FTA 분쟁해결규칙은 FTA 당사국끼리 통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목적으로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상의 절차규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국가의 통상이익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 자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주요 국가의 FTA 관련 무역분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2012년 11월 현재 발효 중인 8개 FTA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무역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국가가 체결한 FTA의 실제적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주요 국가의 FTA 관련 무역분쟁 사례들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들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내용인 주요 국가의 FTA 관련 무역분쟁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은 무역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 체결된 주요국 FTA 관련 무역분쟁 사례들을 분야별 유형별로 비교 분석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그런데 현재 국제사회에서

NAFTA에 근거한 분쟁해결제도는 138건이 조사되지만, 반면에 기타 국가가 체결한 FTA에 근거한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한 사건들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NAFTA 분쟁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비교적 선행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투자분쟁사례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미, 특징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2장에서 수행하였다. 다자주의체제에서 FTA 증가현상에 대한 분석과 FTA의 역할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미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FTA 분쟁해결제도 중 가장 활성화되어 이용되고 있는 NAFTA 분쟁해결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FTA 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동 분석을 통하여 NAFTA 분쟁해결제도가 다른 FTA에 비해 활성화되어 활용되는 이유를 추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NAFTA 무역분쟁사례를 분석·검토하였다. NAFTA 제20장 상의 일반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 3개의 사건(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사건, 수수 빗자루 세이프가드 무역구제 분쟁사건, 트럭운송서비스 무역분쟁사건)과 NAFTA 제19장 상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관련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 2개의 사건(연목 분쟁 사건, HFCS 분쟁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FTA 분쟁에서 발생가능한 쟁점인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협정상의 의무와의 충돌문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에서 NAFTA가 많이 활용되는 제도상의 이유,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과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절충하고 있는 NAFTA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NAFTA 분쟁사례연구를 바탕으로 FTA 무역분쟁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분쟁유형별, 분쟁해결절차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FTA 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과 시사점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다자주의 체제와 지역주의 체제의 병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 현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와의 조화에 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연구와 사례조사연구 방식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WTO 협정문 및 주요국가가 체결한 FTA 협정문의 문헌 비교를 바탕으로 한 법적쟁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WTO, NAFTA 사무국, 주요 국가의 통상담당기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통상분쟁사례에 대한 자료를 습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 2 장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특징 및 현황

제 1 절 FTA의 의의 및 현황

1. FTA의 의의

(1) 개념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의 확산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체결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다.

〈표 2-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 역내관세 철폐 | 역외공동관세 부과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 역내공동경제 정책 수행 |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
|--------------------------------|-----------|---------------|--------------|--------------|
|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 | | | |
|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 | | | |
|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 | | | |
|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 | | | |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FTA는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등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A가 확대되는 주된 원인은 다자주의 체제의 발전과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각국이 다른 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FTA 협정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2) FTA의 법적근거

1) GATT 1994 제24조

FTA에 대한 WTO 근거규정은 GATT 1994 제24조와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양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허용조항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제5조가 있다. 이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GATT 1994 제24조이다.

GATT 1994 제1조는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여, 회원국들 간의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GATT 1994 제24조는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관세동맹이나 FTA와 같이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인 지역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GATT 1994 제24조는 일부 국가들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국들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요건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FTA를 체결함에 있어 협정체결 이전보다도 대외무역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가입국 사이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규칙을 폐지하여야 한다. 즉 GATT 1994 제24조는 FTA의 체결목적이 역내국과 역외국 간의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역내무역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역자유화의 입장에서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서 FTA를 허용하고 있다.

2) GATS 제5조

GATS 제5조상의 경제통합협정은 상당한 서비스부문을 대상으로 체결되고 협정당사국간에 모든 차별조치를 실질적으로 철폐하여야 하고, 역외국가에 대하여 협정체결 이전보다 전반적인 무역장벽의 수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서 GATT 1994 제24조상의 지역조항과 유사하다. 다만 GATS상의 경제통합조항은 GATT 1994 제24조와 달리 조항의 적용에 있어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간에 구분을 두지 않으며, 개도국에 대해서 보다 유리한 대우가 허용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¹⁾

GATS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통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결성하는 경우에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처럼 GATS상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역외국가에 대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구축하지 않는 한 당사국간의 자발적 협정에 의거한 자유무역의 증대는 WTO 체제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²⁾

2. FTA의 현황

(1) 다자주의체제에서의 FTA 증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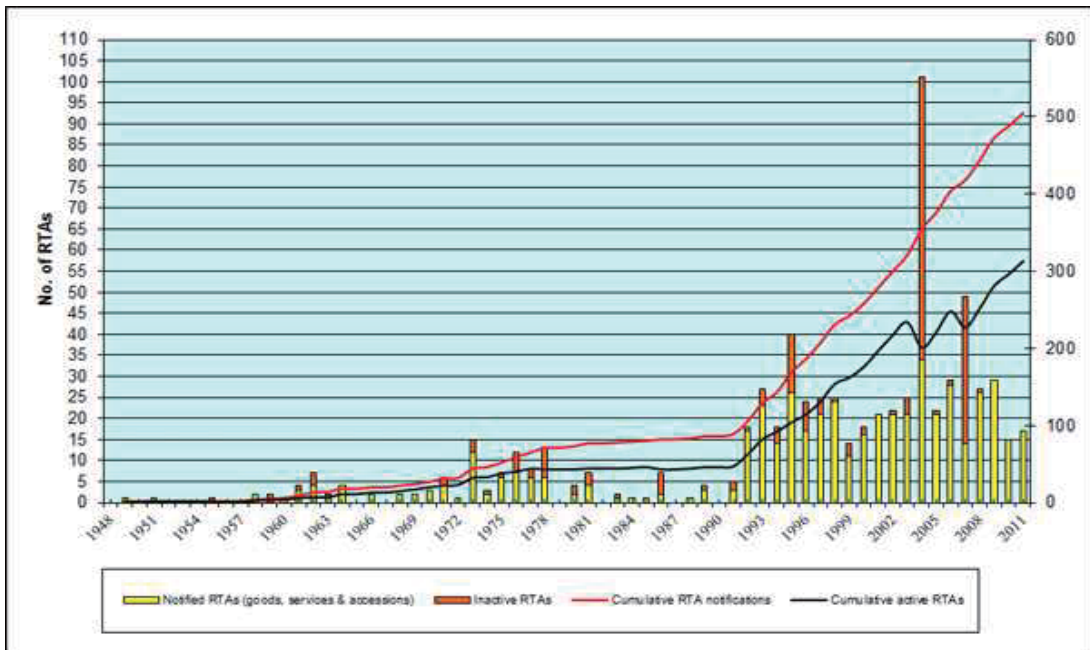
FTA는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의 형성이 그 시초이다. 이후 FTA는 유럽국가들 중심으로 체결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미국이 관심을 보이면서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의 입장변화는 그 동안 FTA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 최승환, 「국제경제법」(제3판, 법영사), 2006, p. 931.

2) 상계서, p. 932.

<그림 2-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9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수의 지역무역협정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2-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2년 10월 현재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는 총 348건이며, 이 중 FTA 형태의 RTA는 총 203건으로 약 58.3%에 해당한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WTO의 성립과 함께 다자주의 체제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이와 함께 FTA의 체결도 증가하면서 국제경제질서의 한 축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1> GATT/WTO에 통보된 연도별 FTA 현황



자료) WTO 홈페이지(www.wto.org, 2012년 10월 13일 방문).

〈표 2-2〉 GATT/WTO에 통보된 RTA 현황 (협정유형별)

2012년 10월 13일 기준

| | 허용조항 | GATS 제 5 조 | GATT 1994 제24조 | 총 계 |
|--|------|---------------|----------------------|-----|
| 관세동맹 (Customs Union) | 8 | | 15 | 23 |
| 경제통합협정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 | 107 | | 107 |
| FTA | 12 | | 191 | 203 |
| 개도국간 협정 (Partial Scope Agreement) | 15 | | | 15 |
| 총 계 | 35 | 107 | 206 | 348 |

자료) WTO 홈페이지(www.wto.org, 2012년 10월 13일 방문).

〈표 2-3〉 GATT/WTO에 통보된 RTA 현황 (협정 수 기준)

2012년 10월 13일 기준

| 대상분야 | 협정 수 |
|----------|------|
| 상 품 | 127 |
| 서비스 | 1 |
| 상품 및 서비스 | 103 |
| 총 계 | 231 |

자료) WTO 홈페이지(www.wto.org, 2012년 10월 13일 방문).

〈표 2-4〉 전세계 FTA 체결현황

한국 : 2012년 9월 기준, 기타국가 : 2012년 9월 기준

| 국가명 | 기체결 | 협상중 | 검토중 |
|-------|--|--|--|
| 한 국 | (발효) ASEAN, EFTA, 인도, 싱가포르, 칠레, EU, 페루, 미국(서명/타결), 터키, 콜롬비아 | GCC,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 MERCOSUR, SACU,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미, 한중일, 말레이시아 |
| EFTA | 한국, EEA, GCC, SACU,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세르비아, 싱가포르, 알바니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팔레스타인, 페루 | 알제리, 우크라이나, 인도, 몬테네그로, 태국, 홍콩,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 ASEAN, 말레이시아, 중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CEPA |
| ASEAN | 한국, 인도, 일본, AFTA, 중국, 호주-뉴질랜드 | EU | EFTA, 대만, 미국 |
| GCC | GAFTA, 레바논 | 한국, EU, MERCOSUR, 일본, 중국, 터키, 인도, 파키스탄, 호주 | ASEAN |

| 국가명 | 기체결 | 협상중 | 검토중 |
|----------|--|---|--|
| E U | 한국, CARIFORUM, EFTA, FYROM SAA, Faroe Islands, 남아프리카공화국 TDCA, 레바논 AA, 멕시코 AA, 모로코 AA, 안도라 CU, 몬테네그로 SAA, 요르단 A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SAA, 세르비아 SAA, 시리아 CA, 알바니아 SAA, 알제리 AA, 이스라엘 AA, 이집트 AA, 크로아티아 SAA, 터키 CU,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AA, OCTs, EEA(EU-EFTA FTA), 칠레 AA, 튀니지 AA | ACP, ASEAN, CA, CAN, GCC, MERCOSUR, 리비아,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인도,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 그루지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베트남, 벨라루스,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이란, 카자흐스탄, 코소보, 일본, 중국, 파키스탄 |
| MERCOSUR | CAN(안데안국가 연합) ECA, SACU PTA, 멕시코 ECA, 볼리비아 ECA, 이스라엘, 인도 PTA, 칠레 ECA, 페루 ECA | EU, FTAA, GCC, 멕시코, 모로코, 이집트, 인도-SACU, 캐나다 | CARICOM, EFTA, SICA, 미국, 중국, 한국 |

제 2 장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특징 및 현황

| 국가명 | 기체결 | 협상중 | 검토중 |
|-----|---|---|---|
| 미 국 | 한국, CAFTA-DR, NAFTA,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오만,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호주 | TPP P4, FTAA, SACU,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태국 |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이집트, 쿠웨이트, 파키스탄 |
| 캐나다 | EFTA, NAFTA,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 한국, CARICOM, EU, MERCOSUR, 도미니카공화국, FTAA, 싱가포르, CA4 | 모로코, 우크라이나, 인도, 일본, 태국 Andean Community |
| 멕시코 | EFTA, EU, G3, MERCOSUR, NAFTA, Northern Triangle, 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스라엘, 일본,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 한국, 싱가포르, 파나마 FTAA, 중미 | 뉴질랜드, 브라질, 에콰도르, 중앙아메리카, 호주, SICA |
| 칠 레 | 한국, TPP P4, CACM, Trans Pacific SEP, EFTA, EU, MERCOSUR,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터키, 파나마, 페루, 호주 | FTAA, 말레이시아, 베트남, 에콰도르, 태국 | 인도네시아,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

| 국가명 | 기체결 | 협상중 | 검토중 |
|------|---|---|---|
| 콜롬비아 | CAN CU, EFTA, EU AA, G3, Northern Triangle, 칠레, 캐나다, 한국 | FTAA, 싱가포르, 파나마 | 멕시코, 페루 |
| 페 루 | CAN CU, EFTA, 미국 TPA, 싱가포르, 중국, 칠레, 한국 | Central American Countries, 페루, TPP확대 | CARICOM, GCC,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러시아, 모로코, 이집트, 인도 |
| 인 도 | SAFTA, 한국, ASEAN, MERCOSUR, 네팔, 부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일본, 칠레, 아프가니스탄 | EFTA, EU, GCC, SACU, 말레이시아 CECA, 모리셔스 CECPA, 태국, BIMST-EC |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대만, 러시아, 스위스, 우루과이,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터키, 파키스탄, 호주, IBSA |
| 싱가포르 | 한국, EFTA, GCC, 뉴질랜드, 미국, 요르단, 인도, 일본, 중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호주, TPP P4, AFTA | 대만, 멕시코, 우크라이나, 캐나다, 파키스탄 | EAC, EU, 모로코, 스리랑카, 이집트 |
| 일 본 |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스위스,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 GCC, 페루, 호주, 몽골 | 한국, EU, 뉴질랜드, 대만, 몽골, 미국, 캐나다, 한중일, TPP |

제 2 장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특징 및 현황

| 국가명 | 기체결 | 협상중 | 검토중 |
|-----------|---|--------------------------------------|--|
| 중 국 | ASEAN,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페루, 홍콩, 코스타리카 | GCC, SAC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호주, 한국 | MERCOSUR, 스위스, 인도, 한중일 |
| 태 국 | 뉴질랜드, 일본, 페루, 호주, AFTA | EFTA, 미국, 인도, BIMST-EC | EU,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레인, 중국, 칠레, 파키스탄 |
| 인도 네시아 | AFTA, 일본 EPA | EFTA CEPA, 호주 CEPA | 인도 CECA, 칠레, 터키, 한국 CEPA |
| 말레이시아 | AFTA, 일본 EPA, 인도 CECA, 파키스탄 CEPA | EU, TPP확대, 미국, 터키, 호주 | GCC, 시리아 EFTA, 한국 |
| 베트남 | AFTA, 일본 EPA | TPP 확대 | EFTA, EU, 한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
| 대 만 |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키리과, 파나마 | 싱가포르, 중국 ECFA | EU,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
| 터 키 | 한국, EFTA, EU CU, FYROM, 그루지아, 모로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시리아, 알바니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튀니지, 팔레스타인자치정부 | Faroe Islands, GCC,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셸 | 에디오피아, EAC, ECO, 몰타, MERCOSUR, SACU, 멕시코, 알제리,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파키스탄 |

| 국가명 | 기체결 | 협상중 | 검토중 |
|------|---|--|-----------------------------------|
| 호 주 | PACER, 뉴질랜드, 뉴질랜드-ASEAN, 미국, 싱가포르, 칠레, 태국, 파푸아뉴기니 | 한국, GCC, UAE,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EPA, 인도 CECA | PIF, TPP P4,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
| 뉴질랜드 | GCC, PACER, TPP P4,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CEP, 중국, 태국 CEP, 호주, 호주-ASEAN, 홍콩 CEPA | 한국, TPP,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멕시코, 미국, 인도, 일본 |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2012년 10월 13일 방문).

(2) 다자주의 체제에서의 FTA의 역할

RTA의 증가는 WTO가 근간으로 하는 다자주의 체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회원국간의 차별적 대우를 인정하는 RTA는 WTO 체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상호 충돌관계로 이해될 수도 있다. 또한 WTO 체제는 RTA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장치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RTA 관련 WTO 규범의 불명확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동 규범의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³⁾ 그러나 FTA를 비롯한 RTA는 다음과 같은 효과로 인해 다자주의 체제에서도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개별국가들이 FTA에 대한 활용도와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3) 김정수,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통상법적 고찰”,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2004. 8., p. 172.

1) 무역자유화의 실현

GATT 및 WTO 체제가 설립된 이후에도 GATT 1994 제24조에서 지역무역협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우선 무역자유화의 실현이라는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FTA를 포함한 RTA의 기본적인 목적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RTA가 체결될 경우 협정당사국간 무역장벽이 철폐됨으로써 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실현되는 한편, 이들 RTA가 지니는 비회원국에 대한 본질적 차별성은 완화됨으로써 RTA는 다자간 세계무역체제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⁴⁾

2) 무임승차 방지효과

무역자유화의 실현을 위하여 GATT 및 WTO 체제에서는 최혜국대우를 포함한 다양한 원칙을 통하여 회원국간의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무역체제는 본질적으로 다수의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 국가들이 무역자유화를 위해 타국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의 제거를 추진하는 경우, GATT 및 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르게 되면 무역자유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제3국들에게도 동등하게 일방적으로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ATT 1994 제24조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병행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TA와 같은 RTA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4) 손수석, “지역주의의 심화와 FTA의 선호 이유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09. 3., pp. 35-36.; Jeffery A. Frankel, Regional Trade Block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5, pp. 77-113.

3) 교착된 다자주의 체제의 보완 효과

1994년 WTO 체제의 설립으로 인하여 국제통상환경은 본격적으로 다자주의 체제로 편입되게 되었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이념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는 새로운 통상질서의 정착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반면 WTO 체제의 정착은 WTO 회원국수의 증가와 광범위한 의제의 채택으로 다자간 교섭의 복잡화·장기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자간 국제규범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의 경우 특별한 성과없이 교착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국제통상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통해 통상분야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실현하고 있다. 물론 FTA의 광범위한 추진은 관련 국가들의 WTO 유인가능성을 저해시켜 WTO로 대변되는 다자주의 체제의 효용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으나,⁵⁾ FTA의 이념도 해당 국가의 무역장벽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의 실현이 기본이념이고, 해당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착된 다자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효율적 대응

최근 국제통상환경에서는 이전의 상품무역 분야 이외에도 투자, 경쟁정책, 서비스무역,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통상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WTO 규범체제에서는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양자간 또는 특정국가간 이루어지는 FTA는 해당 분야에 대한 원활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개별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손수석, 상계논문, p. 31.

제 2 절 FTA 분쟁해결제도

1.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1995년 WTO가 발족된 것을 계기로 국제통상체제에서 다자주의 체제가 강화되었으나, 이와 함께 양자 혹은 복수국가간의 RTA에 의한 통상체제의 유지도 함께 심화되었다.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WTO와 같은 다자적 무역체제와 달리 RTA는 두 국가 혹은 소수의 국가만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그 분쟁해결제도 역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FTA 분쟁해결절차는 WTO 분쟁해결절차보다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소수의 국가들 간의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 다자간 분쟁해결에 비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정치적 협상의 여지를 넓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FTA 협상은 WTO틀에서 각국이 합의한 무역자유화 수준을 기준으로 양허를 지역협정의 틀에서 제공하다는 WTO-PLUS⁶⁾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⁷⁾ 따라서 해당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할 때, 분쟁의 쟁점이 FTA의 특별 양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FTA 분쟁해결절차는 보다 심도있는 그리고 폭넓은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6) WTO Plus란 자유무역협정, 지역협정 등을 통하여 기존 WTO협정을 구체화하거나 추가한 규정/제도 등을 통틀어 편의상 지칭하는 것으로 당해 FTA/지역협정 체결국 간에만 적용된다. WTO Plus는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협상 시 더욱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WTO-Plus는 DDA협상 등 다자간무역협상 진전을 저해하고 협상력이 뒤지는 개도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상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민원안내 참조.

7) 도현수,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분석-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 pp. 30-31.

2. FTA 분쟁해결제도의 관할권

(1) 개 관

앞의 <표 2-2> GATT/WTO에 통보된 RTA 현황(협정유형별)에서 확인한 것처럼 FTA 형태의 RTA는 총 203건으로 약 58.3%에 해당한다. 이들 FTA는 대부분 자체적인 분쟁해결조항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규칙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된다.⁸⁾

FTA가 자체적으로 분쟁해결제도를 두는 이유는 해당 FTA에 의해 다루어지는 내용이 현 WTO 협정에 포함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FTA 회원국이 모두 WTO 회원국인 경우에도 WTO 분쟁해결제도에 의해 FTA 관련 분쟁사안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는 명시적으로 WTO 협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만을 다룬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한 협정이 FTA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분쟁을 FTA 협정에 근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없다. 이러한 FTA 분쟁해결제도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⁹⁾

이러한 특징으로 WTO 회원국들간에 별도의 FTA를 체결한 국가는 당사국들 간에 통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WTO 분쟁해결제도와 FTA 분쟁해결제도 사이에서 관할권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8) FTA상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WTO 분쟁해결제도와 잠재적인 상충가능성을 야기함으로써 향후 FTA를 통한 통상정책이 WTO체제와 조화로운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덕근, “WTO 체제에서의 FTA 분쟁해결제도,” 『통상법률』 (통권 제49호), 2003. 2., p. 72 참조.

9) 이상은 상계논문, pp. 48-49 참조.

(2) 관할권의 적용과 선택

1) 배타적인 관할권

배타적인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이란 관련 통상분쟁이 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 양측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FTA 분쟁해결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FTA 협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FTA 협정에 의해 마련된 분쟁해결제도만이 적용되며, WTO를 포함한 여타의 국제협정상 또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2) 선택적인 관할권

선택적인 관할권(Alternative Jurisdiction)이란 관련 통상분쟁이 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 양측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WTO 분쟁해결제도와 FTA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관련규정이 WTO 협정에도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 분쟁사안 해결을 위한 사법관할권 선정을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덤핑 문제에 관한 분쟁인 경우, FTA 반덤핑협정에 의거하여 FTA 상의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WTO 반덤핑협정에 의거하여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회원국들의 합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⁰⁾

3. FTA 관련 무역분쟁의 현황

WTO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각국은 FTA의 체결을 가속화 하고

10) 이상은 상계논문, pp. 49-50 참조.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국가 간의 양자 무역협상 또는 경제블록 추진이 점차 증가하면서 역외국가 가 받게 되는 반사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의 확대는 국가간 통상분쟁의 발생시 WTO 분쟁해결제도와 FTA 분쟁해결제도 사이에서는 관할권 선택문제에 직면 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NAFTA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 분쟁해결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FTA 분쟁사례를 발견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부처 홈페이지 및 기타 연구자료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려고 하였 으나, 실제 국가간 통상분쟁 발생시 FTA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EU는 그동안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지역 등 역내·인근 국가와의 FTA 또는 관세동맹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나, 최근 한국과의 FTA를 발효하고 페루, 콜롬비아, 중미 국가들과 FTA를 타결하는 등 협상 대상국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¹¹⁾ 그런데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한 현황을 보면 FTA 분쟁해결제 도에서 분쟁을 해결한 사건은 전무하다. 비록 EU가 본격적으로 FTA 를 체결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FTA가 체결된 이후 상대 국가와 발생한 분쟁 건수가 3건에 불과하지만, 이 3건 모두가 FTA 분 쟁해결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해결되었다 (아래 표 2-5 참조).

11) 금혜윤,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6 No.33), 2012. 9. 20., p. 7.

〈표 2-5〉 EU의 분쟁해결 제도 이용현황

| EU상대교역국 | WTO 분쟁해결 | | FTA |
|-----------|----------|--------|-----|
| | FTA 이전 | FTA 이후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0 | 0 | 0 |
| 멕시코 | 3 | 1 | 0 |
| 칠 레 | 4 | 2 | 0 |
| 중앙아메리카 | 1 | 0 | 0 |
| 콜롬비아 | 0 | 0 | 0 |
| 페 루 | 2 | 0 | 0 |
| 한 국 | 7 | 0 | 0 |
| 계 | 16 | 3 | 0 |

자료) Edna Ramirez-Robles, “The WTO Influence in EU FTAs, through the dispute settlement lens”, Clean Energy Economy for the Region(CLEER) presentation, The Hague, 2010.11(available at www.asser.nl).

반면, NAFTA에서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3개국으로 구성된 NAFTA는 2012년 10월 현재 총 138건의 분쟁을 NA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한 것에 비해, WTO 분쟁해결제도는 총 35건에 불과하다. 또한 NAFTA는 NAFTA 제19장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이 제20장 일반무역분쟁에 비해 현저하게 이용빈도가 높다.

〈표 2-6〉 NAFTA 회원국별 WTO / NAFTA 분쟁해결제도 이용현황

2012년 10월 13일 현재

| 응소국 | 제소국 | WTO 분쟁해결 | NAFTA 제20장 | NAFTA 제19장 |
|-----|-----|-------------|---------------|---------------|
| 캐나다 | 미 국 | 5건 | 1건 | 19건 |
| 캐나다 | 멕시코 | 0건 | 0건 | 3건 |
| 멕시코 | 미국 | 6건 | 0건 | 16건 |
| 멕시코 | 캐나다 | 0건 | 0건 | 3건 |
| 미 국 | 멕시코 | 9건 | 2건 | 46건 |
| 미 국 | 캐나다 | 15건 | 0건 | 48건 |
| 계 | | 35건 | 3건 | 135건 |

주) 비상이의심사절차가 개시된 3건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WTO 홈페이지 및 NAFTA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분쟁현황표를 조사하여 구성.

제 3 장 NAFTA 분쟁해결제도

제 1 절 분쟁해결절차

1. 개 관

1992년 10월 17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체결한 NAFTA는 관련 국가 간의 교역 및 투자확대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용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NAFTA는 회원국 시장의 개방 및 공정한 투자기회의 보장을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의 GATT 체제하에서 보호가 미약하였던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 국제투자제한의 철폐, 농산물교역의 자유화, 서비스 교역, 기술집약적 제품의 자유로운 교역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다자주의 체제가 미국의 통상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보이자, 쌍무협정의 체결을 통한 자국의 무역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배경에서 출범되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에서 미국 무역규제 강화정책이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판단 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¹²⁾

NAFTA의 분쟁해결제도는 WTO 분쟁해결제도와 달리 사안별로 독자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다. i)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20장상의 '당사국간 분쟁해결절차', ii)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에 따른 분쟁에 한해 적용되는 제19장상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 iii) 일방당사국의 투자자와 타방당사국간의 투자분쟁에만 적용되는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제11장),¹³⁾ iv) 노동

12) NAFTA의 체결배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헌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분쟁해결 절차", 『중재학회지』 (제3권), 1993, pp. 69-70 참조.

13) NAFTA 회원국에게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는

협력협정상의 절차규칙이 적용되는 노동분쟁해결절차, v) 환경협력협정상의 절차규칙이 적용되는 환경분쟁해결절차 등 분야별로 별도의 독자적인 절차규칙이 적용되는 5가지 유형의 ‘분산된’ 분쟁해결절차규칙을 구비하고 있다(표 3-1 참조).¹⁴⁾

〈표 3-1〉 NAFTA의 분쟁해결방식

| 범 주 | 주요 절차규정 | 당사자자격 |
|---------------------------|---|------------|
| 당사국간 일반분쟁 (제20장) | (i) 당사국간의 협의. (ii) 자유무역위원회가 제공하는 주선, 조정 및 중재. (iii) 비구속적인 중재. | 회원국 정부만 |
| 반덤핑 및 상계관세분쟁 (제19장) | (i) NAFTA 회원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에 관한 국가조사당국의 최종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양국간 패널(Bi-national panel)에 요청할 수 있음. (ii) 양국간 패널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이 수입당사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iii) 양국간 패널의 판정은 당사국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수입국의 국내법상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당사국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비상이의신청절차(Extraordinary Challenge Procedure)를 요청할 수 있음. | 회원국 정부만 |
| 노동분쟁 (NAALC) | 노동협력협정(NAALC)은 노동분쟁에 관한 별도의 절차규칙을 구비하고 있음. | 회원국 정부만 |

다른 절차규칙과 달리,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자’(회원국 국민)에게도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14) 최승환,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제도-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제21집 제1호), 2012. 7., p. 221.

| 범 주 | 주요 절차규정 | 당사자자격 |
|-----------------|---|--|
| | (i) 사인은 자국의 정부당국에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음. (ii) 당사국은 정부간 협의를 개최할 수 있음. (iii) 전문가위원회는 특정 노동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함. (iv) 위반이 있는 경우, 협의를 개시됨. (v) 5인으로 구성된 중재패널 설치. | |
| 환경분쟁 (NAAEC) | 환경협력협정(NAAEC)은 환경분쟁에 관한 별도의 절차규칙을 구비하고 있음. 회원국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지속적 위반사태가 있는 경우, (i) 협의 요청. (ii) 협의에 의한 해결 실패시, 특별이사회 개최 요청. (iii) 5인으로 구성된 중재패널 설치. | 회원국 정부만 |
| 투자분쟁 (제11장) | (i) 중재절차를 원용하기 전에 협의 및 협상 단계를 완료해야 함. (ii) 중재는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절차규칙이나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수행됨. (iii)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음. ICSID 협약 또는 뉴욕협약, 범미주협약 상의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음. (iv)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는 제20장상의 당사국간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중재패널을 설치함. | 외국투자 자도 NAFTA 회원국에 대한 중재절차 회부 가능 |

자료) 최승환,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제도-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전계논문, pp. 221-222.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

(1) 개 관

NAFTA 제19장은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조치와 관련된 무역분쟁에 적용된다. NAFTA 제19장은 독립적인 양국간 패널을 구성하여 역내국의 통상행정당국이 내린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법규의 수정안에 대한 패널의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패널판정의 재심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이의신청절차와 역내 국가의 국내법규의 적용으로 패널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패널절차

회원국은 WTO 협정 및 NAFTA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의 반덤핑 및 상계조치 관련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독립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의 법규개정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양국간 패널에 회부된다. 동 패널에서 개정법규에 대해 수정을 권고하는 경우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90일의 협의 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입법 또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거나 60일 이전의 서면통보로써 당사국에 대해서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¹⁵⁾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의 성격은 국내 사법적 심사절차를 대체하는 성격의 절차로, 패널은 역내국의 행정기관이 내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하여 그 국가의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15) 안덕근, “WTO체제에서의 FTA 분쟁해결제도”, 전계논문, p. 59.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동 패널절차에서는 협의가 패널 설치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패널심사는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와 관련된 최종판정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잠정조치 혹은 기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패널의 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패널심사는 최초의 심사 요청일로부터 315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패널은 최종조치를 확정하거나 반송할 수 있는데, 패널의 반송권한은 WTO 분쟁해결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권한으로 NAFTA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상의 특징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¹⁶⁾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의 패널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¹⁷⁾

〈표 3-2〉 NAFTA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 시한

| 해당규정 | 절 차 | 시 한 |
|-----------------|-----------------------------|----------------------|
| R. 34 | 패널심사 요청 | 0일 |
| R. 39 | 제소 접수 | 패널심사 요청 후 30일 이내 |
| R. 40 | 제3자 참가통보 | 패널심사 요청 후 45일 이내 |
| Annex 1901.2(3) | 패널위원 선임 | 55일 |
| R. 41 | 최종판정, 판정사유, 행정기록 및 목차 제출 | 제3자 참가통보 접수 후 15일 |
| Annex 1901.2(3) | 5번째 패널위원 선임 | 61일 |
| R. 57(1) | 제소자 입장서 제출 | 행정기록 접수 후 60일 |
| R. 57(2) | 주무당국 또는 제3자 입장서 제출 | 제소자 입장서 제출 후 60일 |

16) 상계논문, p. 61.

17) NAFTA 제1904.9조.

| 해당규정 | 절 차 | 시 한 |
|-----------------|-----------|-------------------|
| R. 57(3) | 반박 입장서 제출 | 주무당국 입장서 제출 후 15일 |
| R. 57(4) | 추가자료 제출 | 반박 입장서 제출 후 10일 |
| R. 67(1) | 구두 진술 | 반박 입장서 제출 후 30일 |
| Article 1904.14 | 패널 판정 | 315일 |

자료) 안덕근, “WTO체제에서의 FTA 분쟁해결제도”, 전계논문, p. 61, <표 2> Chapter 19 패널심사절차 시한.

(3) 비상이의신청절차

NAFTA 제19장은 패널판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대신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국들을 위하여 재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패널판정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분쟁관련 당사국 정부가 패널절차 또는 판정상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비상이의신청절차(Extraordinary Challenge Procedure)를 진행할 수 있다. 동 절차는 i) 특정 패널위원의 부정행위, 편견 또는 심각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거나, 행위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ii) 패널이 기본적인 절차규칙으로부터 심각하게 이탈한 경우 iii) 패널이 적절하게 심사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그 권한, 권능 또는 관할권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¹⁸⁾, 그러한 위반행위가 패널판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 패널심사과정의 통일성을 위협하는 경우에 개시된다. 비상이의신청절차는 당사국 정부만이 제기할 수 있다.¹⁹⁾

전직 및 현직 법관이 참여하는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이의신청위원회(Extraordinary Challenge Committee, ECC)’는 패널판정의

18) NAFTA 제1904.3조.

19) 최승환, “NAFTA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전계논문, p. 201.

사실인정과 결론이 기초하고 있는 법적·사실적 분석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사유가 인정될 경우 원 패널에 반송할 수 있다.²⁰⁾ 비상이의신청위원회가 원 패널 판정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패널이 구성되며, 반송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원패널이 재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원 패널의 파기절차는 패널판정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패널절차상의 오류를 치유하기 위한 절차이며, 반송을 통한 재심사 절차는 실질적으로 패널판정에 대해 법적인 해석을 재실시하는 상소절차에 해당한다.²¹⁾

(4)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공정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는 경우 회원국의 국내법이 패널절차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i) 패널설치의 방해, ii) 패널판정의 방해, iii) 패널판정의 이행 방해 또는 패널판정의 법적 효력 및 구속력 부인, 또는 iv) 최종결정에 대한 패널심사 기회 미제공 등의 행위를 야기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우선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협의 요청 후 45일 이내에 또는 협의당사국이 합의하는 기간 내에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설치 요청 후 15일 이내에 설치된다.

특별위원회가 회원국의 국내법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 관련 국가는 10일 이내에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60일 이내에 상호 만

20) ‘비상이의신청위원회’는,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후(설치 요청 접수후 15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들에 의해 설치됨), 90일 이내에 위원회 결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 패널이 무효로 되는 경우 새로운 패널이 절차규칙(Annex 1901. 2)에 따라 설치된다(Annex 1904. 13).

21) 안덕근, “WTO체제에서의 FTA 분쟁해결제도”, 전계논문, pp. 62-63 참조.

족스러운 해결책을 도출하여야 한다. 협의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기 협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소국은 피제소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피제소국은 i) 제소국이 취한 보복조치가 명백하게 과도하거나, ii) 피제소국이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재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보복조치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당사국으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한 협의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²²⁾

3.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

(1) 개 관

NAFTA 제20장의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는 제19장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나 제11장 투자분쟁해결절차, 제14장 금융서비스분쟁해결절차에 관련된 사안 이외의 역내국간의 통상분쟁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0장의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는 해당 국가만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주체가 되므로, 개인은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GATT 1994 제23조의 절차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개인은 자국정부가 제20장의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다른 회원국을 상대로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NAFTA 회원국은 타 국가가 취하고 있는 조치 또는 제안중인 조치가 협정상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또는 당해 조치가 자국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 동 조치를 원용할 수 있다.²³⁾

22) 특별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안덕근, “WTO체제에서의 FTA 분쟁해결제도”, 전계논문, pp. 63-64 참조.

23) NAFTA 제2004조 및 Annex 제2004조.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는 분쟁에서는 NAFTA나 WTO가 모두 다를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NAFTA나 WTO 중에서 원하는 분쟁해결기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선택적인 관할권). 그러나 일단 선택된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은 배제된다.²⁴⁾

그러나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당해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당해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3채약국이 동일 사안을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 양 채약국은 단일의 분쟁해결기관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분쟁은 통상 NAFTA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게 된다.²⁵⁾

상기와 같이 제소국은 NAFTA와 WTO 분쟁해결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제104조에 열거된 환경 및 보존협정에 관련된 분쟁, 제7장 B절상 위생 및 검역조치 관련된 분쟁, 제9장 표준 조치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피소국이 NA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제소국은 NAFTA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²⁶⁾ 또한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제소국이 이미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더라도 피소국이 절차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요청서를 전달하게 되면 동 서면요청서를 전달받은 제소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철회하고 NAFTA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4) NAFTA 제2005.6조.

25) NAFTA 제2005.2조.

26) NAFTA 제2005.3조, NAFTA 제2005.4조.

(3) 분쟁해결절차

1) 협 의

NAFTA 회원국은 동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에 대해 회원국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을 도출하도록 협력(cooperation) 및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동 협의에 참가하는 체약국들은 만족할 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해결방안을 회피하여야 한다.²⁷⁾ NAFTA의 협의 규정은 WTO 분쟁해결양해와는 달리 제안된 조치에 대해서도 분쟁해결절차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패널의 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²⁸⁾

2) 자유무역위원회의 주선 · 조정 · 중개

협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체약국들이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국은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²⁹⁾의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³⁰⁾ 자유무역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임시 또는 상설 소위원회와 작업반 및 전문가단을 설치하거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체약국들의 합의에 따른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선, 조정, 중개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권고를 내릴 수 있다.³¹⁾ 자유

27) NAFTA 제2003조

28) 안덕근, “WTO체제에서의 FTA 분쟁해결제도”, 전계논문, p. 53.

29)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되는 자유무역위원회는 제20장에 규정된 분쟁을 관할하는 NAFTA의 중심적인 상설분쟁해결기구로서 협정이행의 감독, 지속적인 구체화작업 추진,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해결,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모든 소위원회 및 작업반활동의 감독,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상은 정성조, 「NAFTA와 통상분쟁의 해결」, 한국법제연구원, 1993., p. 5.

30) NAFTA 제2007.1조.

31) NAFTA 제2007.5조.

무역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총의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NAFTA 자유무역위원회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적·독립적인 중재기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화해지향적 분쟁해결을 강조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기구이다.

3) 패널절차

자유무역위원회에서 당사국간에 원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은 서면으로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NAFTA 패널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와 달리 분쟁당사국간 협의와 자유무역위원회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설치될 수 있다. 동 패널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도 서면으로 참가의사를 통보한 후에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WTO 패널과 달리 NAFTA 패널은 패널위원 명부에 등재된 30인 중 5인을 선발하여 구성된다.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를 패널위원으로 지명할 수도 있으나, 당사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될 수 없다.³²⁾

중재패널은 위원이 모두 선임된 후 90일 이내에 최초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특이한 점은 중재위원이 명시적으로 소수의견을 밝힐 수가 있다는 점이다.³³⁾ 패널은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패널절차는 12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자유무역위원회에 전달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됨으로써 사건은 종료된다.

32) NAFTA 제2009조, 제2011조.

33) NAFTA 제2016.3조. 다만 구체적으로 패널위원 중 누가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NAFTA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는 WTO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상소검토제도가 없으며, 제19장상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에서 언급되어 있는 재심제도도 없다. 또한 NAFTA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패널판정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 2 절 이행절차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는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단지 유효성의 확인 및 부인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AFTA 제20장 상의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다. 제20장의 이행절차는 위반조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동 조치의 철회, 이행의 금지 및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제19장 상에서 취할 수 있는 이행조치는 앞에서 살펴본 비상이의신청위원회의 재심절차와 특별위원회의 보복조치만 가능하다. 동 조치들은 패널절차의 진행 등과 같이 사법적 심사절차의 부당성으로 인하여 정당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절차의 개선 및 회복을 취할 수 있는 조치일 뿐, 동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직접적인 통상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이행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의 이행

패널은 최초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전달받는 즉시 패소국은 패널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패소국이 패널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은 동일한 분야에서 침해된 혜택의 규모와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승소국에 의해 보복조치가 시행된 후에 동 조치의 규모가 명백하게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서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유무역위원회가 이행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보복조치가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패널의 설치 없이 승소국이 최종보고서의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승소국의 보복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패소국으로 하여금 패널 권고사항의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패널판정과 달리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패널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패소국이 최종보고서의 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WTO 분쟁해결제도 와 달리 패널판정의 이행과정에 대한 보고 및 감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최종 단계인 이행에 대한 규범 부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³⁴⁾

34) 안덕근, “WTO체제에서의 FTA 분쟁해결제도”, 전계논문, p. 57.

제 4 장 NAFTA 분쟁사례 분석

제 1 절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분쟁사례

1.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 - Tariffs applied by Canada to Certain U.S.-origin Agricultural Products³⁵⁾

(1) 사건의 개요

미국은 NA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에 해당하는 특정 농산물(일반적으로 유제품, 가금류, 알류, 맥아 및 마가린, 기타 이들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하여 NAFTA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캐나다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NAFTA 협정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원산지 제품에 존재하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수 없다는 NAFTA 제302.1조와 해당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NAFTA 제302.2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할당수입량을 초과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지만, 이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비관세 장벽의 관세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된 관세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가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와 미국은 FTA 제4장에서 관세의 단계적 철폐에 동의하였지만 FTA 제7장에서 특정 농산물 무역과 관련하여 수출품에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는데 동의하였고,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지속적 적용은 FTA 제710조³⁶⁾에 의해 정당화 된다. 그런데 NAFTA 협상 과정에서 양국은 기존의 FTA 규정을 지속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FTA 관련규정은 그대로 NAFTA로

35) CDA-95-2008-01(1996. 12. 2).

36) 이 장에 따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는 GATT 1994 제11조하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GATT와 GATT하에서 체결된 협정에 규정된 농산물, 식품, 음료와 특정 관련상품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캐나다-미국 FTA 제710조.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FTA 관련규정의 NAFTA로의 병합은 WTO 농업협정의 기반이 되는 관세화 체제 또한 NAFTA와 병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NAFTA 당사국들은 쿼터내 거래에 있어서는 캐나다-미국 FTA가 적용되고, 쿼터초과 거래에 있어서는 다자주의 체제인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도출된 협의에 구속된다고 동의하였으므로 캐나다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미국 FTA, WTO 농업협정, NAFTA 등이 당사국에 의해 원용된 동 사건에서, 패널은 우선 특정 미국산 농산물에 부과된 관세가 NAFTA의 관세부과 관련규정을 위반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동 사건에서 캐나다는 자국의 행위가 WTO 농업협정에 부합하는 조치임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NAFTA 부속서 제702.1조의 1문단에 의해 NAFTA로 새로 편입된 규정들 중 하나인 FTA 제710조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FTA 제710조의 일시적 적용, 실질적 적용, NAFTA 제3조와 제7조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패널은 FTA 제710조가 WTO 체제에서 확립된 농업의 비관세 장벽을 대체하는 체제를 NAFTA 내로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은 비관세 장벽의 도입 및 유지하지 않을 의무와 관세 양허표에 설정된 대로 농산품의 초과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여할 권리, 이와 함께 관세를 삭감하고 특정 최소 수입량을 보증할 의무를 구성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NAFTA 제302.1조에 의해 축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캐나다가 취한 상계관세부과조치는 NAFTA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다.

동 사건은 캐나다가 부과한 상계관세조치가 NAFTA에 의해 정당화되는 조치인가가 핵심쟁점이었고, 법리적으로는 NAFTA와 WTO 농업협정에서 각 국의 의무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 해결을 위한 절차의 적용 및 법리해석이 쟁점이었다. 농산물 분쟁인 동 사건에서는 WTO 농업협정과 NAFTA 협정이 중복되어서 적용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캐나다가 부과한 관세는 NAFTA 체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WTO

농업협정의 내용과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위한 양허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패널은 판단하였다. 법리적으로도 패널은 양 당사국이 NAFTA 협상과정에서 FTA 규정을 지속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지역무역협정인 NAFTA와 WTO 농업협정과의 관계에서는 NAFTA가 하위 규범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동 결정을 내림에 있어 패널은 WTO협정 및 RTA/FTA와 같은 통상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조약규정의 해석 및 적용, 조약규정간 효력 등에 관한 일반국제법규칙에 따른 원론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분쟁해결절차관련 쟁점

동 사건은 NA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에 해당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NAFTA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캐나다 정부가 부과한 사건으로 NAFTA 제20장에 근거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

우선 미국은 NAFTA 제2006.4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 2월 2일 캐나다와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협의단계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1995년 6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NAFTA 제2007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자유무역위원회에서도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패널절차의 진행을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1995년 6월 14일 NAFTA 제2008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NAFTA 제20장은 분쟁해결절차의 결정과 관련하여 i) 제소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당사국 선택의 원칙, ii) 제소기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NAFTA 우선적용의 원칙, iii) 일단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다른 관할권의 적용은 배제되는 자동적 관할 배제의 원칙(단, NAFTA가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제외)이 적용되는데, 동 사건은 미국의 결정에 의해 NAFTA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었다. 동 사건에서는 멕시코도 1995년 6월 19일 서한을 통해 제3당

사국의 지위로 소송절차에의 참여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멕시코도 NAFTA 제2013조에 따라 변론출석, 서면 및 구두진술, 분쟁당사국의 서면진술 수령 등을 행하였다.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가 배포된 후 14일 이내에 최초보고서에 대한 서면 논평을 제출하여야 하는데(NAFTA 제2016.4조), 동 사건에서는 1996년 7월 15일에 송달되었으므로 7월 29일 이내에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의견개진과 관련하여 NAFTA 제2016.5조에 근거하여 패널은 캐나다에게 별도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캐나다가 제출한 답변에 대하여 미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미국이 제출한 서면의견에 대해서는 캐나다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기한의 경과를 초래하게 하므로, NAFTA 제2017.1조에 규정된 최초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패널은 동 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당사국들에게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고, 분쟁 당사국은 패널이 제시한 기한 연장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1996년 12월 2일에 제출되었다.

2. 세이프가드 무역구제 분쟁 - U.S. Safeguard Action taken on Broom Corn Brooms from Mexico³⁷⁾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996년 3월 4일 미국 내 수수 빗자루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U.S. Cornbroom Task Force가 다자간 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는 ‘1974년 무역법’ 제202조에 근거하여 멕시코산 수수 빗자루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및

37) USA-97-2008-01(1998. 1. 30).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U.S. Cornbroom Task Force는 NAFTA 제801조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행하는 국내법인 'NAFTA 적용에 관한 법률' 제302조(b)에 근거한 청원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미국 무역위원회는 두 건을 병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 두 건 모두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행정부는 1996년 9월 6일과 10월 9일 멕시코 및 제3국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1996년 11월 28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간 부과하였다.³⁸⁾ 동 조치에 대한 반발로 멕시코는 1996년 12월 12일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1997년 1월 14일에 NAFTA 제2008조에 따라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동 사건의 쟁점은 NAFTA 회원국 정부는 GATT 1994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NAFTA 제802조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미국이 GATT/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지만, 선결적 항변으로 NAFTA 패널이 GATT 1994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의무를 기초로 한 법적청구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핵심쟁점이었다.

38) 미국이 취한 세이프가드조치는 다음과 같다. NAFTA 하에서 이전에 무관세였던 96센트 이하인 멕시코산 수수 빗자루는 다자간 관세할당 121,478 dozen 개 이내의 수입물량에 대하여 무관세를 유지하지만, 121,478 dozen 개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하여 첫 1년간 33%의 초과관세율을 적용하고 2년차에 32.5 센트로 인하하고 3년차에는 32.1센트로 인하하고 그 이후로는 NAFTA의 미국 양허표에 기재된 의무에 따라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한다. 이전까지 관세할당 100,000 dozen 개 이내의 수입 물량이 무관세였고 초과물량에 대해 22.4%의 관세를 부과해온 96센트 이상의 멕시코산 수수 빗자루는 할당량 내 물량은 무관세를 유지하고 초과관세율로 첫 해에 33%를 적용하고 2차 년도에 32.5%로 인하하고 3차 년도에는 32.1%로 인하하고 그 이후로는 NAFTA의 미국 양허표에 기재된 의무에 따라 16%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플라스틱 빗자루 또는 일부 수수를 포함하는 플라스틱 빗자루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무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USA-97-2008-01(1998. 1. 30). para. 13.

선결적 항변인 NAFTA 패널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미국은 패널이 GATT 1994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의무에 대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의 위임범위와 패널의 설치 근거가 되는 제12장에 따르면 NAFTA 패널은 NAFTA에 규정된 의무에 기초한 법률적 권리로 제한되므로, GATT 상의 의무가 NAFTA로 병합되어 적용되지 않는 한 패널이 GATT 상의 의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미국은 주장하였다. 즉, 동 사건은 GATT 및 WTO 협정에 규정된 청구이므로 GATT/WTO 분쟁해결제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멕시코는 동 사건의 쟁점인 국내산업의 정의의 범위는 GATT/WTO 협정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NAFTA 제2005.1조에 따라 NAFTA에서 분쟁해결을 개시하는 것은 정당하며, NAFTA 제2006.5조는 NAFTA 또는 GATT에 따라 분쟁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배제하므로 동 사건에서는 NAFTA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패널은 동 사건은 NAFTA 협정만으로 동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므로 NAFTA의 관할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패널은 NAFTA 부속서 제803.3조(12)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3.1조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NAFTA에 따라 결론을 내리더라도 WTO 세이프가드 협정이 침해받거나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동 사건은 NAFTA 부속서 제803.3조(12)에 의해서 검토되었으며, 미국이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 무역위원회는 수수 빗자루와 플라스틱 빗자루를 서로 상이한 제품군으로 분류한 후, 동 사건에서 미국의 국내시장은 수수 빗자루만으로 구성되었다고 결정을 내렸다.³⁹⁾

39) 미국 무역위원회는 원료의 동일성,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산 수수 빗자루와 멕시코산 수수 빗자루는 대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수 빗자루와 플라스틱 빗자루는 생산방법의 차이(수수 빗자루는 수작업 제작 방식인 와이어 이음 방식이 약 84%, 못 이음 방식이 약 16%로 제작되지만 플라스틱 빗자루는

이에 대해 멕시코는 수수 빗자루와 플라스틱 빗자루는 유사성(like)이 확인되므로 직접경쟁에 대한 주장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당연히 국내산업의 범위에는 플라스틱 빗자루를 생산하는 업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공정의 차이, 별개의 재무기록 유지, 다른 원자재의 사용이 동종제품 여부를 결정하는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유사한(like)의 의미는 ‘identical’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similar’ 보다는 더 큰 유사성을 의미한다고 반박하였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동종물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이전 GATT/WTO 판결에서 동종물품의 개념을 정의한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패널은 동종(like) 및 직접경쟁(directly competitive)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동종(like)은 시장에서 상호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물리적·기능적 유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았고 직접경쟁(directly competitive)은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모든 동종물품은 직접경쟁관계에 있지만, 동종이 아닌 물품들도 역시 직접경쟁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위원회에서는 플라스틱 빗자루를 국내산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직접경쟁 용어의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제품이 아니지만 여전히 직접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으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패널은 지적하였다. 따라서 모든 개별적인 법적·사실적 문제에 관해 논리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NAFTA에 위반한다고 패널은 결정하였다.

자동 제작방식인 스테이플 고정방식이 약 80%, 못 이음 방식이 약 20%로 제작), 두 제품의 차별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성능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상이한 용도 등을 이유로 다른 제품군으로 보고 수수 빗자루만 국내산업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USA-97-2008-01(1998. 1. 30). para. 24.

40) USA-97-2008-01(1998. 1. 30). para. 74.

(2) 분쟁해결절차관련 쟁점

동 사건은 미국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NAFTA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인지가 쟁점인 사건으로 NAFTA 제20장에 근거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협상을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인, 1996년 8월 21일 멕시코는 NAFTA 제 2006.4조에 근거하여 협의를 요청하였다. 제3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협의는 요청서 전달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므로, 양국은 9월 6일과 10월 9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양국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이에 멕시코는 NAFTA 제2007조에 따라 1996년 11월 25일 NAFTA 무역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멕시코의 요청에 따라 1996년 12월 11일 무역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고, 1997년 1월 14일 멕시코는 NAFTA 제2008조에 근거하여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NAFTA 제20장은 분쟁해결절차의 결정과 관련하여 i) 제소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당사국 선택의 원칙, ii) 제소기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NAFTA 우선 적용의 원칙, iii) 일단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다른 관할권의 적용은 배제되는 자동적 관할배제의 원칙(단, NAFTA가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제외)이 적용되는데, 동 사건에서 멕시코는 NAFTA에 회부하였다. NAFTA 패널이 1997년 7월 17일 구성되었고, 1997년 12월 23일 최초보고서가 당사국들에게 회람되었다. 이후 최초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1998년 1월 16일 패널에게 전달되었고, 최종보고서는 1998년 1월 30일 제출되었다.

동 사건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NAFTA에게 관할권이 부여되는가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핵심쟁점이었다. WTO 협정과 FTA협정은

내용상으로는 유사하지만 실제 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국내법에서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 사건에서도 국내산업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 무역위원회의 해석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기초한 판단에 따라 멕시코 산 수수 빗자루의 수입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었다. 비록 동 사건의 패널에서는 NAFTA 관할권에 대한 판단이 없이 NA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관할권의 성립여부에 대한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사건에서는 두 규정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쟁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제통상규범이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비해 FTA는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더 구체화된 기준 및 내용을 담고 있는 경향이 강하므로, 양 규범이 충돌할 경우, 관할권 선택과 관련하여 특정 분쟁해결제도를 배제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수도 있다. 동 사건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i) NAFTA 패널이 GATT/WTO 협정이 근거가 되는 사건에서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세부 기준인 NAFTA를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인지, ii) 이에 따라 NAFTA의 당사국 선택의 원칙에 따라 멕시코가 선택한 NAFTA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 것인지, iii) 관할권 부재에 따라 GATT/WTO 분쟁해결절차는 배제되고 NAFTA 분쟁해결절차가 적용이 된 것인지, iv) i)과는 반대로 GATT/WTO 분쟁해결기구도 NAFTA가 근거가 되는 사건이 GATT/WTO 협정에서 야기된 사안이라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동 사건에서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패널이 어려운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3. 서비스 무역분쟁 - Cross-border Trucking Services⁴¹⁾

(1) 사건의 개요

동 사건은 1995년 12월 20일 미국이 안전규제상의 문제를 들어 미국내의 멕시코 트럭운송 서비스 사업업자들에 대한 허가를 총괄적으로 거부하고 이 분야의 사업에 있어 멕시코 국민들의 투자를 허가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협의를 요청한 사건이다.

1994년 1월 1일 NAFTA의 발효로 이해 당사국들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유보하는 조치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과 멕시코는 각국의 차량운송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국은 멕시코 트럭들이 미국의 안전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운송서비스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멕시코는 미국이 국경을 통과하는 트럭운송 서비스, 버스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내 설립된 기업들의 투자행위에 대한 유예선언을 철폐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준수를 통해 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제시하는 멕시코 운송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의 전반적인 위험성으로 인해 모든 멕시코 운송업체는 미국 내 운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항목점검(flagging)방식의 평가는, 미국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업체별 개별 평가방식 및 미국 운송업체의 이의신청권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치이기에 내국민대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멕시코 국적여부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항목점검(flagging) 방식의 평가가 캐나다 운수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최혜국대우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 사건에서는 항목점검(flagging) 평가방식 이외에도 이

41) USA-MEX-98-2008-01(2001. 2. 6).

의접수신청 절차의 금지, 유예기간의 연장, 외국국가에게 미국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규제프로그램의 채택요구, 미국 차량운수사업에 대한 멕시코기업의 투자 제한 등도 함께 쟁점이 되었다.⁴²⁾

이에 대해 미국은 멕시코의 안전성 관련 정책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협의의 진척이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은 NAFTA 규정상 미국의 의무와 합치하며, 오히려 NAFTA 규정상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따라 NAFTA의 일방 당사국은 적법한 규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다르게 처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기록 및 안전기록에 대한 정보(운행일지)의 접근이 필요한데 멕시코의 차량으로부터는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 멕시코의 차량은 무작위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운송업체와 멕시코 운송업체는 동일한 환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멕시코 차량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포함한 미국이 취하는 여타의 조치는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사건에서는 캐나다도 NAFTA 제2013조의 규정에 따라 패널절차에 참가하였다. 캐나다는 동 쟁점들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상호호혜적인 조치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NAFTA 패널은 멕시코가 트럭 서비스의 영업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국이 거절하는 행위와 미국의 유예선언의 지속행위는 NAFTA 상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

42) 멕시코는 이외에도 미국이 국경을 통과하는 트럭운송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유예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NAFTA 패널은 일본-주세사건에서의 WTO 상소기구의 판결과 칠레-주세사건에 상소기구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개별 입법자 또는 집행자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의도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였다. USA-MEX-98-2008-01(2001. 2. 6), para. 214.

대우를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멕시코의 자국 내 규제시스템의 미비를 이유로 유예선언을 지속하는 것은 법적근거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NAFTA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이지 않고, 준수를 보장하는데 필요하며, 무역에 있어 자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에 기초하지 않아야 한다는 멕시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미국의 제한은 멕시코 국민이 미국 내에서 국제화물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2) 분쟁해결절차관련 쟁점

트럭 운송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당사국간의 분쟁에서 우선 양국은 1996년 1월 19일 NAFTA 제2006조에 따라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양 당사국의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은 실패하게 되고, 1998년 7월 NAFTA 제2007조에 따라 NAFTA 자유무역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NAFTA 자유무역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도 성과를 얻지 못하자 1998년 9월 멕시코 정부는 NAFTA 제2008.1조에 따라 중재패널을 설치하였다.

동 사건에서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가장 핵심쟁점은 NAFTA가 WTO 보다 확대된 양허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당사국 간에 통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의 문제이다. 개별 FTA가 WTO 수준보다 심화된 양허를 보장하는 경우, WTO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 분쟁사례

1. 연목 분쟁

(1) 사건의 개요

미국과 캐나다의 연목분쟁사건은 NAFTA 제11장 투자자 국가분쟁 3건을 포함하여 NAFTA 체제에서만 23건(캐나다-미국 FTA 3건 포함), GATT 체제에서 2건, WTO 체제에서 7건의 분쟁을 촉발한 양국간의 최대의 분쟁사례이다. 동 사건은 2012년 1월까지도 중재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⁴³⁾ 미국과 캐나다간 연목 목재 무역은 양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연목은 미국의 총 수요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대미 수출품 중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간 분쟁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2년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 주정부가 벌목회사에게 입목 벌채권을 제공하는 제도(stumpage program)가 규정을 위반하는 보조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983년 미국은 동 제도가 특정산업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중단하였다.

1) GATT 연목 분쟁¹⁴⁴⁾

1986년 6월 미국은 캐나다의 연목생산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 대상여부인지를 다시 조사를 개시하였고, 조사결과 캐나다의 동 제도가 GATT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5%의 상계관세를

43) 안덕근/신원균,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의 문제점 고찰: 미국-캐나다간 연목(Softwood Lumber) 분쟁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104호), 2012. 4., p. 12.

44) GATT, SCM/83 - 34S/194 (1987).

부과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양국은 동 사건을 GATT 패널에 제소를 하게 된다.

동 사건에서 미국은 캐나다 주 정부가 입목 벌채권을 판매하는 것은 정부가 특혜성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미국이 이미 관련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을 다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보조금협정 제2.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자연자원상의 비교우위에 대해 상계관세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협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15%의 잠정보조금율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1986년 12월 양국은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연목에 대해 15%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GATT 소송을 철회하였다.

2) GATT 연목 분쟁 245)

GATT 연목 분쟁 1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캐나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991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BC) 주 정부는 입목비가 인상되어 수출세가 초과되자 수출세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10월 4일 캐나다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양해각서가 종료되었고, 미국은 국내 무역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미국은 캐나다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캐나다산 연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미국이 취한 조치가 보조금 협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실시한 상계관세 조사가 보조금 협정 제2.1조에 합치하는가 여부였다.

45) GATT, SCM/162 (1993).

동 사건에서 패널은 양 당사국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이 보조금 협정 제4.5조 a의 가격약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오히려 패널은 미국의 조사개시 및 철회가 미국의 국내사정과 공익에 따라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미국이 취한 조치는 보조금 협정 제5.1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미국의 주장도 제4.6조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미국이 진행한 자체조사의 발동자체는 보조금 협정 제2.1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3) NAFTA 연목 분쟁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간 연목분쟁은 양자간 체결한 FTA에서도 분쟁화가 되었다. 미국-캐나다 FTA에서도 현재의 NAFTA와 동일하게 제19장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해당하는 무역분쟁은 독립적인 양국간 패널을 구성하여 역내국의 통상행정당국이 내린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법규의 수정안에 대한 패널의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패널판정의 재심절차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이의신청절차와 역내 한 국가의 국내법규의 적용으로 패널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동 사건의 배경은 1992년 미국-캐나다 FTA 체제에서 발생한 연목분쟁의 해결을 위해 양 당사국은 캐나다산 연목수입을 자율 규제하는 1996년 연목협정(Softwood Lumber Agreement, SLA)에 합의하였으나, 동 협정이 2001년 3월에 종료되자 미국의 연목공정수입연합이 다시 무역구제를 청원함으로써 사건화 되었다. 동 청원에 대한 조사결과 미국은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긍정판결을 내렸으며, 아울러 미국에 연목을 수출하는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연목수입에 대해 19.31%의 상계관세의 부과와 함

계 12.58%의 반덤핑관세도 부과하였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캐나다는 NAFTA와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였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총 13건의 소송절차(반덤핑관세부과조치 4건, 상계관세부과조치 6건, 산업피해 판정조치 3건)가 진행되었다.

반덤핑관세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03년 7월 첫 번째 NAFTA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캐나다 연목상품수출업자에게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대해 부분 찬성하고 부분환송을 결정하였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WTO 반덤핑협정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국내법에 의한 규제를 허용하는 NAFTA 체제의 특성과 기존의 미국 국내판정을 고려할 때 미국의 조치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상무부가 시장가격을 계산하는데 있어 대상 상품간의 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일부 오류로 인해 부분환송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덤핑관세부과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간에는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2005년, 2006년에 총 3번의 패널이 더 설치되었다. 2005년 세 번째 패널에서는 덤핑마진 등의 산정과 관련한 미국 조치의 부당함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특히 세 번째 패널에서는 이전의 첫 번째 패널에서 결정하였던 제로잉 관행이 허용가능한 조치라는 결정을 번복하고 미국 상무부가 덤핑마진 산정시 제로잉 마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NAFTA 패널의 재조사와 권고사항의 제시, 미국 당국의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2006년 네 번째 패널에서 연목협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게 된다.

상계관세부과조치와 관련하여서는 2003년 8월 NAFTA 패널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사건에서 NAFTA 패널은 WTO 패널의 쟁점과 동일한 쟁점인 재정적 기여와 특정성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NAFTA 패널은 캐나다의 별채권이 상계대상 보조금으로 재정적 기여와 혜택,

그리고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만, 미국 상무부가 별채권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시장만의 가격을 고려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양국간의 시장상황이 비교가능하다는 실질적 증거가 제공한다는 이유로 환송결정을 내렸다. 이에 미국은 다시 보조금을 산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세부 계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이유로 재산정을 요청하는 환송결정을 수차례 내렸다. 결국 동 사건에 대해 미국은 2006년 4월 NAFTA 특별소위원회에 본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부과와 상계관세부과조치는 미국의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의 피해여부에 대한 긍정판정을 받아야 한다.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미국의 판결이 NAFTA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산업피해 판정분쟁과 관련한 쟁점은 미국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판정조치가 합리성과 실증적 증거에 기초를 하는가 여부였다. 2003년 9월 동 쟁점과 관련한 첫 번째 패널에서는 미국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판정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⁴⁶⁾를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03년 12월 재심사를 실시하였고, 캐나다산 연목의 수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과 저가의 연목 수입으로 인해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또다시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패널은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i) 패널의 권고가 미국이 충분히 대응할 정도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ii) 패널이 무역위원회의 권한과 NAFTA 협정에 반하

46) 미국 국내 산업의 피해에 대한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조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캐나다산 목재수입의 급증에 대한 분석, 캐나다산 연목의 수입량 중 덤핑이나 보조금에 의한 수입이 차지하는 기여에 대한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유로 NAFTA의 비상이의신청절차를 통해 패널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비상이의신청위원회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4) WTO 연목 분쟁 147)

미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1996년 연목협정이 2001년 3월 31일 종료된 후, 미국 상무부가 2001년 8월 잠정상계관세부과 조치를 내리자 캐나다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함으로써 WTO 연목분쟁이 개시되었다.

미국의 연목수입연합의 청원에 의해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미국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산 연목이 가격대비 19.31%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이 문제를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관세를 소급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캐나다의 입목 벌채권 부여제도가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혜택의 판정에 있어서 시장조건 대신 미국의 입목 벌채권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급적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미국이 잠정관세를 부과한 시기가 조사개시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도 60일 이내에 보조금을 부여할 수 없다는 보조금 협정 제17.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동 사건에서는 미국의 협정 위반 항목들이 절차적 기준의 위반과 상계관세 산정에 있어서 기준설정의 오류 등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미국의 국내법 자체가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시장조건을 기준으로 혜택 여부를 재심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상계관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47) WTO, WT/DS236/R (2002. 11. 1).

5) WTO 연목분쟁 248)

WTO 연목분쟁 1의 WTO 패널보고서가 당사국에게 회람된 것은 2002년 11월이었는데, WTO 패널보고서가 회람되기 이전에 미국 정부는 2001년 8월의 잠정상계관세에 이어 2002년 4월 19.34%의 확정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의 확정상계관세조치에 대해 캐나다는 2002년 8월에 WTO에 제소를 하였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WTO 연목분쟁 1에서 제기된 쟁점을 그대로 다루었다. 동 사건의 패널에서는 WTO 연목분쟁 1의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상소기구에서는 패널의 판결에 대한 일부 수정이 있었다.

입목별채권과 관련하여 동 제도가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과 상소기구 모두 동의하였다. 다만 혜택의 존재와 관련하여서는, 패널이 시장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시장가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격을 사용한 점에 대해 위반판정을 내린 것에 반해, 상소기구는 보조금 공여국 시장에서 정부의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표를 판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판정기준에 대해 번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판정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법적판결을 완결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2004년 2월 WTO 상소기구의 판결이 내려진 후 양국은 10개월의 이행기간에 합의하였다.

6) WTO 연목분쟁 349)

2001년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연목수출에 대해 반덤핑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01년 10월 예비판정에 이어 2002년 4월에 확정판

48) WTO, WT/DS257/R (2004. 2. 17), WT/DS257/AB/R (2004. 2. 17), WT/DS257/RW (2005. 12. 20), WT/DS257/AB/RW (2005. 12. 20).

49) WTO, WT/DS264/R (2004. 8. 31), WT/DS264/AB/R (2004. 8. 31), WT/DS264/RW (2006. 9. 1).

세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조사 신청이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정보나 정확하고 적정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제로잉 마진 방식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다.

동 사건은 미국 상무부의 조사개시 절차가 불충분한 자료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캐나다는 미국이 객관적인 가격정보에 기초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조사개시 시점에 제출된 자료의 충분성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조사가 개시된 이상 해당 국가가 조사개시와 관련한 증거자료의 충분성 심사에 관한 지속적인 평가의무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반면 제로잉 마진 방식에 있어서는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 상무부의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7) WTO 연목분쟁 450)

미국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동 사안은 미국 무역위원회가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국내 연목산업이 현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나, 조만간 덤핑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제품의 수입이 대규모로 증가할 것이 임박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캐나다가 2003년 4월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2004년 4월, 패널은 미국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피해의 위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협정과 및 보조금 협정을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미국은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4년 11월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수입급증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고 있으며

50) WT/DS277/R (2004. 4. 26), WT/DS277/RW (2006. 5. 9), WT/DS277/AB/RW (2006. 5. 9).

수입의 급증 이외에는 다른 요인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캐나다는 미국의 결정이 WTO 패널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5년 2월 이행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행패널은 미국의 재조사 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였으나, 이행패널의 상소기구인 이행패널의 결정이 적절한 심사기준(standard of review)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패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2) 분쟁해결절차관련 쟁점

미국과 캐나다간의 연목분쟁 사건은 캐나다-미국 FTA와 NAFTA와 같은 FTA 협정에 기초한 양자간 분쟁해결절차와 GATT 및 WTO의 다자간 분쟁해결절차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활용된 사건이다. 캐나다의 입목벌채권 정책을 상계가능한 보조금으로 판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캐나다-미국 FTA/NAFTA 패널과 GATT/WTO 패널에서 동시에 다루어졌으며, 제로잉 마진 관행에 대해서는 NAFTA와 WTO 패널에서 동시에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산업피해와 관련하여서도 NAFTA와 WTO 패널이 동시에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연목분쟁 사건 중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NAFTA와 WTO에 동시에 제기된 사건들에서 쟁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의 국내법의 적정성 판단문제, WTO 협정과 NAFTA 협정의 조화문제 등이 동 분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타난다.

반덤핑관세부과조치와 관련하여 동 사건은 NAFTA와 WTO 패널에서 동시에 다루어졌다. NAFTA와 WTO 패널 모두 제로잉 마진에 대해서는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임을 언급하였다. 다만 NAFTA 2003년 첫 번째 패널에서는 제로잉 마진이 국내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조치라고 결정하였으나, 2005년 세 번째 패널에서는 제로잉 마진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NAFTA 제

19장이 회원국에게 타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자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2003년 첫 번째 패널에서는 회원국의 국내법 적용 권리에 초점을 두어 제로잉 마진 관행이 적용가능한 조치임을 결정하였지만, 2005년 세 번째 패널에서는 회원국의 국내법 적용권리보다 WTO 규범과의 조화에 초점을 두어 제로잉 마진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쟁해결절차적인 측면에서 동 사건은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반덤핑 관세부과조치가 제로잉 관세부분을 제외하고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는 점이다. 다만 동 사건에서도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조치가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상계관세부과조치에 대한 사건인 NAFTA 연목분쟁과 WTO 연목분쟁 1, 2 사건에서는 보조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었다. WTO 패널은 캐나다의 입목 별채권 정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해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검토가 진행되었다. WTO 패널은 조치의 발효시점, 기간, 소급 적용 등의 절차적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판정한 것에 비해, NAFTA 패널은 구체적인 보조금의 산정에 있어서 보조금을 산출을 위한 비교기준의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환송결정을 내렸다. 동 사건은 WTO 패널이 미국의 조치가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WTO 보조금의 협정을 위반할 뿐이지 미국의 상계관세법 자체가 WTO 국제규범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과, NAFTA 패널도 보조금율의 산정기준과 방식이 문제된 것이지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당사국의 소극적 이행 및 패널의 권고에 대한 거부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NAFTA 패널

이 미국 무역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자 미국은 패널의 권고를 거부하고 비상이의신청절차를 통해 패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반면 WTO에서는 미국의 불이행 조치를 이유로 캐나다가 미국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행패널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하였지만, 상소기구는 오히려 이행패널이 적절한 심사기준을 채택하지 못하고, 제소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또한 미국은 패널의 권고를 거부하고 신청한 비상이의신청절차에서도 패소하였다. 동 쟁점과 관련한 이행은 2006년에 양국이 연목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HFCS 분쟁

(1) 사건의 개요

동 사건은 멕시코로 수출되는 미국 산 과당 옥수수 시럽(High Fructose Corn Syrup, HFCS)⁵¹⁾의 덤핑 수입여부가 이슈가 된 사건이다. 1998년 2월 동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1998년에 멕시코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여 패널의 판정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멕시코가 여전히 조치의 수정 및 이행을 하지 않자, 미국이 이를 이유로 다시 NAFTA에 제소한 사건이다.

1) WTO HFCS 분쟁⁵²⁾

멕시코 상공회의소는 미국산 HFCS에 대해 덤핑 수입여부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멕시코 통상당국은 97년 2월 조사개시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97년 6월과 98년 1월, 잠정관

51) 동 제품은 음료와 식품 등의 첨가물로 많이 쓰이는 제품으로 설탕의 대체용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p. 456.

52) WTO, WT/DS132/R (2000. 1. 28).

세부과조치와 반덤핑 확정관세부과조치를 각각 발동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멕시코의 조치가 반덤핑협정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위반함을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멕시코의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WTO 패널판정에 의해 패소한 멕시코는 잠정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패널의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국의 입장에 따라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미국은 동 사건의 이행을 위한 이행패널의 심리를 요청하였고, 이행패널에서도 다시 멕시코의 재판정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결정되었다. 이에 멕시코는 상소하였으나, 2001년 11월 상소기구에서도 멕시코의 협정위반을 최종 확인하였다.

2) NAFTA HFCS 분쟁⁵³⁾

그런데 WTO 분쟁해결절차와 별도로 동 사건은 NAFTA에도 제소되었다. 1998년 2월에 동 사건이 처음 제소되었으나, 패널위원 임명이 연속적으로 지체되어 최종 평결은 WTO 분쟁해결절차가 마무리된 2001년 8월에서야 발표되었다. NAFTA 판결에서 패널은 멕시코의 조치가 WTO에서 내린 판결처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WTO 판결이후의 수정조치도 여전히 미국 산 HFCS의 수입이 멕시코 국내산업에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멕시코의 조치가 GATT는 물론 멕시코 국내법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90일 이내에 반덤핑관세부과조치의 철회와 이미 부관한 반덤핑 관세의 환급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멕시코는 NAFTA 패널의 권고사안이 98년 멕시코의 조치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후의 멕시코의 수정조치를 고려하

53) MEX-USA-98-1904-01 (2001. 8. 3), MEX-USA-98-1904-01 (2002. 4. 15).

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기존의 조치를 고수할 것을 2001년 11월에 발표하였다. 하지만 2002년 4월의 두 번째 패널보고서에서도 이전 패널의 고려사항은 적절한 범위내의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멕시코의 수정 및 이행조치가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위반하고 있음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철회와 징세 금액의 환급을 다시 권고하였다.⁵⁴⁾

(2) 분쟁해결절차관련 쟁점

동 사건은 NAFTA가 다자주의 규범인 WTO 규범에 의해 평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NAFTA는 WTO 패널의 평결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지라도 NAFTA 패널의 심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심리 기준이 해당국가(이 사건에서는 멕시코)의 국내법이라는 것도 명시하였다.

즉, WTO의 재판권은 멕시코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의 위반임을 평결하는 것이고, NAFTA의 재판권은 동 조치가 멕시코의 관련 국내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임을 확인하면서, 멕시코 당국이 사실 기록을 통해 동 조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패널 위원의 구성과정에서 지체로 인해 WTO가 먼저 동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였지만, 패널의 권고사항 이행 단계에서는 명확한 시일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는 등 WTO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조치를 시행하였다.⁵⁵⁾

54) 이상은·정수영, “FTA 분쟁해결기제의 실효성 연구 -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 151-152 참조.

55) 상계논문, pp. 152-153 참조.

제 3 절 NAFTA 분쟁사례의 특징

1.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NAFTA의 회원국은 모두 WTO 회원국에 해당하므로 분쟁해결제도의 선택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NAFTA 제20장이 적용되는 일반무역분쟁 해결절차에서는 당사자 선택의 원칙에 따라 NAFTA와 GATT, GATT에 따라 체결된 협정, 혹은 GATT의 후속협정과 공통으로 관련된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선택하거나, 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NAFTA 우선적용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NAFTA 혹은 GATT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NAFTA가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분쟁해결절차는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자동배제의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 NAFTA 제20장상의 절차가 적용된 사건은 본문에서 살펴본 총 3개의 사건이다.

특정 농산물 무역구제 사건에서는 미국은 캐나다가 취한 조치가 NAFTA 규정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정하여 WTO 분쟁해결제도가 아닌 NAFTA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건을 WTO에 회부할 경우에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위한 조치라는 캐나다의 주장에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수 빗자루 세이프가드 무역구제 분쟁에서는 NAFTA 패널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의해 제기되었다. 미국은 동 사건은 GATT 및 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법적분쟁이므로 NAFTA 패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NAFTA 상의 세이프가드 규정과 GATT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WTO 분쟁해결기구가 관할권을 가지는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없이 NAFTA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

정하였다. 비록 동 사건에서 패널의 관할권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리지는 못하였지만, “지역주의의 다자화(multilateralize regionalism)”⁵⁶⁾ 측면에서 패널이 접근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다.

국경간 트럭운송 서비스 무역분쟁에서도 NAFTA가 확대된 양허를 제공하는 사안에서 멕시코가 WTO 분쟁해결제도를 동 사건의 분쟁해결기관으로 선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제20장의 위의 사건들과 달리 NAFTA는 제19장에 근거하여 많은 사건들이 다루어졌다. 특히 본문에서 언급된 미국-캐나다 연목분쟁 사건과 미국-멕시코간 HFCS 사건은 NAFTA뿐만 아니라 GATT/WTO 체제에서도 중첩적으로 다루어졌다. NAFTA 연목 분쟁사건과 WTO 연목 분쟁 사건은 미국이 연목공정수입연합의 청원을 받아들여 취한 반덤핑 관정 및 상계관세부과조치에 대해 캐나다가 WTO에 제소를 함으로써 제기되었다. 미국-멕시코 HFCS 분쟁도 WTO 분쟁해결제도와 NAFTA 분쟁해결제도가 동시에 활용되었다. NAFTA 제20장 일반분쟁해결절차 규정과 달리 제19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기관의 선택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기에 NA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적인 관할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FTA 협정상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분쟁을 WTO 분쟁해결제도와 FTA 분쟁해결제도상에서 중복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분쟁에 대해서 법적인 이슈를 달리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제도상 사법권한의 중복 또는 상충문제를 전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FTA 회원국간 반덤핑 조치에 관하여 FTA 상의 반덤핑협정에 기초하여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판

56) Joost Pauwelyn, “Legal Avenues to “Multilateralize Regionalism”: Beyond Article XXIV”,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2007. 9. 10~12, p. 14.

결이 확정된 이후에 최초 제소국이 동 조치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상
의 다른 조항이나 요건에 기초하여 WTO 분쟁해결제도에 제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론상으로는 관련 규정이나 요
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 최종 판정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상존한다.⁵⁷⁾

2. 협정상 의무의 충돌과 해결

NAFTA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협정상의
의무가 상호충돌하는 경우에서의 해결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NAFTA
분쟁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제적 무역규범인 WTO와 당사국간
의 합의에 의해 더 개방된 양허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정들이 상호충돌하는 문제 중
하나를 앞에서 살펴 본 분쟁해결기관의 선택문제이고, 다음으로는
FTA와 WTO 협정의 내용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예를 들어 위 농산물 무역분쟁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NAFTA와
WTO 농업협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캐나다가 WTO 협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 정당인가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양 당사국이 이전 FTA 규정을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전 FTA
규정은 NAFTA로 병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취한 캐나다의 조치는
NAFTA에서 금지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WTO 농업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세이프가드 무역분쟁에
서의 쟁점도 미국이 국내법에 따라 취한 세이프가드조치가 GATT
1994 제19조 및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즉, 국내법의 적
용과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여 GATT 및 WTO 협정상의 의무가
문제된 경우에, NAFTA가 관할권을 가지는가이다. 미국은 명백하게

57) 이상은 안덕근, “WTO체제에서의 FTA 분쟁해결제도”, 전계논문, p. 50 참조.

양 조약이 병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NAFTA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패널은 국내법의 오류는 NAFTA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동 쟁점에 대한 언급을 피하였다. 비록 동 사건에서 상기 쟁점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사건의 판정에 있어서 WTO 패널에서 언급되었던 동종제품 개념의 정의방식을 그대로 원용하였다는 점에서, NAFTA와 WTO 협정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세 번째 트럭 운송서비스 무역분쟁에서는 미국의 높은 수준의 규제조치와 관련되는 협정상 의무 조항이 상세하게 규정 되어 있는 NAFTA에서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WTO 협정에서는 판단할 규범이 없는 경우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⁵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협정상 의무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NAFTA 회원국은 타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자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일정한 조건⁵⁹⁾하에서 자유롭게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 개정이 상기 일정한 조건을 침해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도, 실제 분쟁에서 타국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분쟁은 국내법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이러한 개정은 관련국가간의 무역분쟁으로 치닫게 될 우려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NAFTA 패널은 NAFTA 제19장상의 반덤핑

58) 동 사건의 쟁점 중 하나였던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하여, WTO GATS에서는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대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것에 반해 NAFTA 제1102조 및 제1103조에서는 구체적인 요건 등을 언급하고 있다.

59) 1) 개정되는 입법이 NAFTA 협정의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2) 개정법이 적용되는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가능한 미리 개정일자를 통고하고, 3) 개정당사국은 개정법이 적용되는 당사국의 요청하에 관련 당사국과 개정일자 이전에 협의하고, 4) 개정내용은 GATT의 반덤핑코드나 보조금코드 및 기타 GATT 후속협정에 부합되고, 5)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효과적이고 공정한 규율을 유지하면서 회원국간의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시키기 위한 공정하고도 예측가능한 조건을 확립할 NAFTA의 목적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NAFTA 제1902조.

및 상계관세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별국의 국내법에 대한 사실상의 국제심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결국 반덤핑 법 및 상계관세법의 통일적 적용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회원국들의 입법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⁶⁰⁾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재심절차의 도입

NAFTA 제19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는 독립적인 양국간 패널을 구성하여 역내국의 통상행정당국이 내린 반덤핑상계관세판정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법규의 수정안에 대한 패널의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패널판정의 사실상의 재심절차인 비상이의신청절차와 역내 한 국가의 국내법규의 적용으로 패널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비상이의신청절차는 NAFTA 패널의 판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⁶¹⁾ 비상이의신청위원회는 전직 및 현직 법관이 참여하는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법적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적 내용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WTO 상소기구가 법률심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는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사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법률심만 다루는 WTO 상소기구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비상이의신청위원회가 더 크다고 할 것이며 실체적 정의의 발견에 있어서도 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60) D.S. Huntington, "Settling Disputes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34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07 (1993), p. 440.

61) 최승환, "NAFTA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경희법학』 (제30권 제1호), 1995. 12, p. 201.

다만, 비상이의신청절차는 아주 제한된 요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에서 활용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상의 비상이의신청절차의 운용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기 비상이의신청절차가 통상적인 상소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⁶²⁾ 상기 미국-캐나다 연목분쟁 사건에서 비상이의심사절차가 활용되었으나, 미국이 패소하였다.

4.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과 규범지향적 분쟁 해결방식의 병존

NAFTA와 같은 FTA는 소수의 당사국간 협상이므로 분쟁해결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적 협상의 여지가 많다. NAFTA에서도 협의, 주선, 조정, 중개 등의 비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의 사전활용을 권장하고 있다.⁶³⁾ 또한 위임사항과 절차규칙의 채택에 있어 당사자 자치원칙을 채택하고, 패널보고서의 채택 시 당사국의 논평을 참작하도록 하는 점들은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모든 NAFTA 분쟁에서 당사국들은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특정 농산물 분쟁 사건에서는 서면에 대한 논평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한의 도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자 패널에서 양 당사국에게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서 당사국들의 논평을 수용하였다.

반면 NAFTA 제19장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는 제20장 일반분쟁해결절차와 달리 보다 공식적이고 규범지향적인 해결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동 절차에서는 협의절차가 전제조건이 아니며, 개인도 자국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패널설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패널

62) D.S. Huntington, *supra* note 60, p. 437.

63) 당사국은 언제든지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실제조치나 계획된 조치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국은 다른 당사국과 국별사무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의 선정시 최대한 전·현직 법조인들을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엄격한 시한절차를 두고 있으며, 패널의 판결에 최종구속력을 부여하고, 비상이의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캐나다 연목분쟁의 경우, 미국 무역위원회 판정의 협정위반성과 패널의 결정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이행이 NAFTA 패널에서 문제되었다. 미국은 패널의 결정을 거부하고 비상이의신청절차를 통해 패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비상이의신청절차에서도 미국은 패소하였다. 이후 동 사건은 2006년 양국이 체결한 연목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는데, 미국이 NAFTA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규범에 의해 패소판정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후 양 당사국이 이행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NAFTA 제19장상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분쟁해결절차가 사법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 5 장 FTA 관련 무역분쟁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

제 1 절 분쟁유형별 정책적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관련 분쟁해결

한국이 체결한 FTA와 NAFTA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관련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FTA 절차의 원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NAFTA에서는 특별한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오히려 많은 사건에서 WTO 분쟁해결제도보다는 NAFTA 분쟁해결제도를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다. NAFTA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관련 분쟁해결절차에서, 회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패널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⁶⁴⁾ 반면, 협의를 패널설치의 전제조건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 역내국가간 교역량 규모,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인접국가에의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보다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NAFTA가 체결될 당시만 해도, 미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덤핑 및 보조금의 지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는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교정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독단적인 심리와 판정에 의해 자유무역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수출도가 높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조치는 자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⁶⁵⁾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NAFTA

64) NAFTA 제1904. 2조.

65) 문 돈, “FTA의 분쟁해결기제”, 「진보평론」 (제23호, 2005년 봄호), p. 132.

의 분쟁해결절차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판정이 내려질 경우 이에 불복하여 독립된 패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에게 부여함으로써, NAFTA 분쟁해결제도는 실질적으로는 무역분쟁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실제 NAFTA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3건을 제외하고는 제19장에 근거한 분쟁해결제도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표 5-1 참조).

〈표 5-1〉 NAFTA 분쟁유형별 현황

2012년 10월 13일 기준

| 응소국 | 제소국 | NAFTA 제20장 | NAFTA 제19장 | | | | | | | 소계 |
|-----|-----|------------|------------|-----|----|----|-----|--------|-----|------|
| | | | AD | CVD | IN | AR | 5YR | injury | ECC | |
| 캐나다 | 미 국 | 1 | 9 | | 10 | | | | | 19건 |
| 캐나다 | 멕시코 | | | | | | | | | 3건 |
| 멕시코 | 미 국 | | 10 | 6 | | | | | | 16건 |
| 멕시코 | 캐나다 | | 3 | | | | | | | 3건 |
| 미 국 | 멕시코 | 2 | 14 | 2 | 4 | 19 | 5 | 1 | 1 | 46건 |
| 미 국 | 캐나다 | | 23 | 16 | 3 | 2 | 2 | | 2 | 48건 |
| 계 | | 3 | 59 | 24 | 17 | 21 | 7 | 1 | 3 | 135건 |

자료) NAFTA 사무국 홈페이지(<http://www.nafta-sec-alena.org/>)의 현황자료를 조사하여 직접 산출.

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NAFTA가 채택한 특별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는 상계조치 관련 통상분쟁의 경우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⁶⁶⁾ 한-미 FTA에서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는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⁶⁷⁾ 또한 다른 국가가 체결한 FTA에서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FTA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고, WTO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통상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속한 분쟁해결도 중요하지만, 불공정무역관행의 해소에 있어서는 WTO 규범의 엄정한 법리의 해석과 적용을 통한 자국 통상이익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각국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환경 등의 특별분야의 분쟁해결

NAFTA 분쟁해결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환경과 보존을 위한 협정, 표준관련 협정,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 등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 보존을 위한 과학적 문제 등에 있어, 피소국의 요청에 따라 WTO가 아닌 NAFTA의 고유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NAFTA의 환경 및 건강관련 규정이 WTO의 관련 규정보다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였다.⁶⁸⁾ 한-미국 FTA에서도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노동 혹은 환경 관련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협의 및 공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먼저 시도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일반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66) 한-칠레 FTA 제7.1조 제2항, 한-싱가포르 FTA 제6.3조.

67) 한-미국 FTA 제10.7조 2.

68) 문돈, 전계논문, p. 133.

노동, 환경, 위생 및 검역 등의 특별분야는 WTO DDA 협상에서도 현재 교착에 빠져 회원국들 사이에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도하라운드와 출범하면서 통상과 환경을 다루기 위한 그린라운드, 노동과 환경을 다루기 위한 블루라운드가 출범하였으나 여전이 당사국간의 시각차이가 있으며, 새로운 쟁점들인 비교역적 고려사항, 위생 및 검역,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국가 간 투자 등에 있어서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다자주의체제를 벗어나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개별국가들의 규제강화 동향, 국제규범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 특별 분야 중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부터 단계별로 규범화 선도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통상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특별분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분쟁해결절차별 정책적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관할권의 선택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상대 국가들은 모두 WTO 회원국에 해당한다. 이에 상대국과의 통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법관할권의 선택, 즉 분쟁해결제도의 선택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FTA는 선택적인 관할권(Alternative Jurisdiction)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절차와 FTA 분쟁해결절차들 사이에서 선택하여야 한다.⁶⁹⁾

69) 한-칠레 FTA 제19.3조, 한-싱가포르 FTA 제20.3조, 한-미국 FTA 제22.6조, 한-터키 FTA 제6.3조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뿐만 아니라 NAFTA에서도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 있어서, 일단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자의적으로 선택(forum shopping)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NAFTA의 경우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3국의 참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일방 당사국이 타 당사국을 대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일방 당사국은 이러한 의도를 제3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제3국이 동 사안을 NAFTA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은 단일의 분쟁해결기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분쟁은 NAFTA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진행된다.⁷⁰⁾ NAFTA는 제3국에게도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 대한 발언권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아닌 NAFTA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쟁해결절차의 선택과 관련하여 한-미국 FTA에서 나타나는 다른 특징은 선택대상협정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타의 FTA가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승계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한 분쟁”만을 분쟁해결절차의 선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미국 FTA에서는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분쟁”으로 하고 있어⁷¹⁾ 한-미국 간에 체결된 모든 협정에 대한 분쟁해결제도로써 FTA 분쟁해결절차가 선택될 수 있

70) NAFTA 제2005.2조.

71) 한-미국 FTA 제22.6조.

도록 하였다. 이는 FTA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을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조항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양국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FTA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의 확장은 관련 통상분쟁에 있어서 WTO 협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방 당사국이 먼저 FTA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동 조항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타국 시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유리함이 있을 수 있으나, 타방 당사국의 입장에서는 WTO 협정상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까지도 FTA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라는 중요한 협상무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FTA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 조항의 반영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익에 이점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협의절차

협의절차는 WTO 분쟁해결제도에서도 나타난다. 당사국들은 패널설치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WTO 체제가 GATT 체제하의 전통적인 실용주의적·화해지향적 방법을 적절히 절충한 것으로 평가된다.⁷²⁾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당사국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요청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요청 접

72) GATT는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체제의 “약한 균형(fragile balance)”을 보존하는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송을 기피해 왔다. J.H. Jackson, “Governmental Dispu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Proposal in the Context of GATT,” 13 *Journal of World Trade Law* 1 (Jan/Feb. 1979), pp. 13-14.

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여야 하다. 동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국은 직접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패성 상품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패널설치 이전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분쟁해결양해의 해석상, 그리고 GATT의 관행상 분쟁당사국은 협의절차를 종료하여야만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⁷³⁾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당사국에게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협의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⁷⁴⁾ 다만, 협정별로 구체적인 일정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협의개시에 관한 일반조항은 없이 부패성 농산물의 경우는 15일 이내에 협의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⁷⁵⁾ 반면,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방의 협의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 및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호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의무를 규정하여 한-칠레 FTA 보다는 신속한 협의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⁷⁶⁾ 한-미 FTA에서는 신속한 협의의무를 두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개시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⁷⁷⁾

FTA 분쟁해결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분쟁해결에서 있어서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소수 국가와 체결된 협정이기에 정

73) 최승환, 전계서, p. 205.

74) 한-칠레 FTA 제19.1조, 한-싱가포르 FTA 제20.1조, 한-미국 FTA 제22.3조.

75) 한-칠레 FTA 제19.4조.

76) 한-싱가포르 FTA 제20.4조.

77) 한-미국 FTA 제22.7조.

치적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FTA 체결에 있어 협의 개시의무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의 신속성 확보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비록 구체적인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한-미국 FTA 처럼 신속한 협의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는 있지만, 규범에 따라 기한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당사국이 협의에 임하는 태도 및 협의개시 의지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별로 상이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의 FTA 협상 정책은 한편으로는 국가 간 사정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의 혼란과 착오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기간에 있어서는 통일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공동위원회 제도

한-미국 FTA에는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회부조항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 체결하는 FTA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한-미국 FTA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가 공동의장이 되고 양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동 위원회는 협정의 이행 및 감독, 양국간의 무역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검토, 협정의 개정 검토 및 약속수정,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의 권한을 가진다.⁷⁸⁾ 양 당사국이 협의요청이 전달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일 때는 2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의 서면통보에 의해 동 사안이 공동위원회에 회부된다.

동 절차의 긍정적인 의미는 통상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정기적인 활동을 통하여 양국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위원회에서 동 건에 대한 사전협의

78) 한-미국 FTA 제22.2조.

가 이루어지므로 패널이 설치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공동위원회의 절차에서 당사국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패널설치가 그 기간만큼 지연된다는 측면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4. 패널절차

(1) 제소요건

WTO 협정은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대한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는 경우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무효화 또는 침해는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WTO 협정상의 이에 대한 무효화 또는 침해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조치의 발동이나 기타상황의 존재 결과로부터도 발동할 수 있다.⁷⁹⁾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i)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 하거나 또는 ii)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⁰⁾ 다만 동 조항의 해석상 GATT 1994 제23조의 협정비위반 제소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⁸¹⁾ 한편 한-미국 FTA에서는 위 요건을 더 세분화하여 협정상의 작위로 인한 의무 위반, 부작위로 인한 의무 위반 그리고 협정비위반 조치의 결과로 무효화 또는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79) GATT 1994 제23조.

80) 한-싱가포르 FTA 제20.2조, 한-EFTA FTA 제9.3조(2).

81) 한-싱가포르 FTA 제20.4조에서는 이 협정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을 넓게 해석할 경우 협정비위반 제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한-EFTA FTA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조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²⁾

반면 특이하게도 한-칠레 FTA와 NAFTA에서는 i)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 하거나 또는 ii)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외에 iii) “협정상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고 일방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³⁾ 즉, 동 규정은 일방 당사국의 판단에 따라 장래에 의무 불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분쟁해결규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인데,⁸⁴⁾ 이는 장래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일방 당사국이 제소할 수 있기에 동 조항이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⁸⁵⁾

(2) 정보의 공개

한-미국 FTA의 경우 비밀정보의 대중공개에 있어 타 FTA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NAFTA 및 한국이 체결한 여타의 FTA의 경우는 패널의 모든 서면입장과 의사소통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어 대중에 공개되지 않지만, 한-미국 FTA의 패널절차는 비밀정보의 보호원칙 조건을 준수한다면 양 당사국의 패널절차상의 모든 서면 입장과 의사소통이 대중에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⁸⁶⁾ 이는 패널절차의 투명성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82) 한-미국 FTA 제22.4조.

83) 한-칠레 FTA 제19.2조, NAFTA 제2004조.

84)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NAFTA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는 한-칠레 FTA에서만 확인된다. 한-칠레 FTA는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FTA이므로, 동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양국이 NAFTA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동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85) 김인숙,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통권 제108호), 2007, p. 94.

86) 배성호,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의 절차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4호), 2011. 12. 28, p. 177.

(3) 시한의 문제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패널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9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상대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는 9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비해, 한-미국 FTA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의장이 선정된 후 180일 이내에 최초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일정 등은 여타의 FTA와 동일하게 나타난다.⁸⁷⁾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는 패널설치 후 최종보고서의 제출까지 약 120일이 소요되지만, 한-미국 FTA에는 공동위원회 설치 및 협의시기와 최종보고서 제출시한 90일이 더 추가되어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타 FTA의 경우는 FTA의 장점인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한-미국 FTA는 타 FTA 협정에 비해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5. 이행절차

패널보고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NAFTA의 경우, 국가간 무역분쟁인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제20장)에 관한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당사국들은 패널보고서의 권고에 입각하여 분쟁해결에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⁸⁾ 한-미국 FTA의 경우 패널보고

87)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국 FTA 모두 동 보고서를 받은 양 당사국은 14일 이내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15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의하여 대중에게 공개된다.

88) NAFTA 제2018.1조.

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당사국들이 분쟁해결에 관해 ‘합의’(일반적으로 패널의 판정 및 권고를 준수하는 것)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⁹⁾

그러나 대부분의 FTA는 중재판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⁹⁰⁾ ‘한-EU FTA’는 중재패널의 판정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다.⁹¹⁾ 중재판정의 이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중재패널의 권위는 손상될 것이며 보복조치의 발동으로 분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패널보고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FTA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효과적인 이행체제와 관련하여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⁹²⁾ 당사국들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반면 한-미국 FTA에서는 패널보고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한-미국 FTA에서는 패널보고서의 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피소국은 패널 최종보고서의 판정과 권고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널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분쟁해결방식에 대해 양 당사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소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동 협상을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를 이루기는 했지만 피소국이 합의조건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제소국이 판단는 경우, 제소국은 피소국

89) 예컨대 한-미국 FTA 제22.12조 1항, 중국-칠레 FTA 제92조 제1항, 중국-파키스탄 FTA 제71조 제1항.

90) 예컨대 한-칠레 FTA 제19.44조, 한-싱가포르 FTA 제20.13조, 한-EFTA FTA 제9.10조 제1항, 한-ASEAN 포괄적경제협력골격협정에 관한 분쟁해결협정 제14조 제1항, 한-페루 FTA 제23.16조 제1항, 중국-페루 FTA 제180조 제2항, 중국-싱가포르 FTA 제98조 제4항, 중국-코스타리카 FTA 제151조 제7항, 한-EU FTA 제14.17조 제2항.

91) 한-EU FTA 제14.8조.

92) 한-칠레 FTA 제19.14조, 한-싱가포르 FTA 제20.13조.

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양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⁹³⁾ 따라서 양 당사국이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받은 후 불이행 절차로 가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모든 내용과 권고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패널은 피제소국이 한-미국 FTA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피제소국의 조치가 제소국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위반사항 및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패널의 판정을 이행한다.

NAFTA의 경우도 패널보고서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실질적인 이행절차에 있어 분쟁해결의 형태가 제20장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와 제19장 반덤핑·상계조치 분쟁해결절차에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는 패널의 판정 및 권고안을 준수하여야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다. 분쟁당사국은 협정상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철회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협정위반국은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반면 반덤핑·상계조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제소국의 보상에 의한 분쟁해결이 유일한 구제책이다.⁹⁴⁾

이행 절차의 경우 구속력과 관련한 규정이 협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속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FTA에서 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규정에 따라 당사국의 무효화 및 침해된 이익은 절차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93) 한-미국 FTA 제22.13조.

94) 이상은 최승환, “NAFTA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전계논문, pp. 193-194 참조.

제 3 절 FTA 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과 시사점

1.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도입의 중요성

국제통상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타방당사자의 협정불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국제경제규범의 준수 및 이행을 기대하기는 요원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제통상분쟁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은 협정의 적용 및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통상분쟁을 위한 방식으로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법과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은 주로 약소국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규범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은 주로 강대국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주권이 제약되는 강제적인 분쟁해결방법 보다는 재판이외의 방법을 통해 당사국간에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거나 또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분쟁해결방식을 의미한다.

WTO의 출범으로 국제경제규범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성립되었으나 아직까지 각 분야별로는 개별적 합의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다자간 국제경제규범은 이해가 상반된 국가간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⁹⁵⁾

오늘날 국제통상분쟁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제도는 크게 다자주의 방식의 WTO 분쟁해결제도와 지역주의 방식의 FTA 분쟁해결제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WTO 분쟁해결제도와 FTA 분쟁해결제도 모두

95) 최승환,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 『통상법률』 (통권 제13호), 1997. 2, p. 129.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모습과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효용성

(1) 협 의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협의이다. 협의(consultation)란 대화를 통하여 쌍방의 주장을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협의는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이 없다는 점에서 주선, 중개, 조정, 중재, 사법재판 등 기타 평화적 분쟁해결방법과 구별된다.

WTO 협정의 해석상 WTO 분쟁해결제도에서도 패널설치 이전에 당사국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⁶⁾ WTO 회원국은 협의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개선하여야 하며,⁹⁷⁾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적절한 협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⁹⁸⁾ 이러한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FTA에서도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FTA의 일방당사국은 협정의 운영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기존의 조치나 제안된 조치 또는 그 밖의 다른 사항에 관하여 타방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⁹⁹⁾ 다만, NAFTA에서는 제20장상의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에서는 협의전치주의를 두고 있으나,¹⁰⁰⁾ 제19장상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에서

96) WTO DSU 제3.6조, WTO DSU 제4.3조, WTO DSU 제4.7조.

97) WTO DSU 제4.1조.

98) WTO DSU 제4.2조.

99) 한-칠레 FTA 제19.4조, 한-싱가포르 FTA 제20.4조, 한-EFTA FTA 제9.3조(1), 한-미국 FTA 제22.7조.

100) NAFTA 제2006.1조.

는 필수요건이 아니다. 협의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협정의 운영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미국 FTA에서는 제22.4조에¹⁰¹⁾ 기술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의 대상은 분쟁해결규칙의 적용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¹⁰²⁾

FTA 분쟁에서 협의는 유연성이 최대의 장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모든 국가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수락될 수 있는 해결책은 당사자간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협의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의사에 달려있고,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일방적 주장의 반복될 경우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고, 특히 강대국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국제통상분쟁에서 협의절차의 효용성은 분명하며, 또한 거의 대부분의 통상규범에서 협의절차를 두고 있는 것에서도 각국이 협의절차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자간 또는 소수국가에 의해 체결되는 FTA 분쟁해결제도에서는 더욱더 협의절차의 효용성은 더욱 강하게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10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대한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3장(농업), 제4장(섬유 및 의류),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7장(정부조달) 또는 제18장(지적재산권)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다만, 그 조치가 제23.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8장(지적재산권)상의 혜택에 대하여 이 호를 원용할 수 없다.

102) 김인숙, 전계논문, p. 97.

(2) 주선, 조정, 중개

주선과 중개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상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인데 양자는 보통 그 개입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주선과 중개는 모두 분쟁당사자가 직접교섭에 의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를 꺼리는 특정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이다. 주선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협상을 권유하거나 회의장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며, 중개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협상을 권유하거나 회의장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쟁내용에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협상에 참여하여 양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한다.¹⁰³⁾ 중개는 주선에 비해 제3자의 개입의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보다 제한된 범위의 중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반면 조정이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독립된 기관이 분쟁의 사실을 모든 관점에서 심사하여 그 해결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함으로써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분쟁해결방법이다.¹⁰⁴⁾

WTO 협정에서의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당사국의 합의시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절차이다.¹⁰⁵⁾ 동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가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동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¹⁰⁶⁾ 또한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패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¹⁰⁷⁾

103) 이상은 최승환,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 전계논문, p. 131 참조.

104) 상계논문, pp. 134-135.

105) WTO DSU 제5.1조.

106) WTO DSU 제5.2조, 제5.3조.

107) WTO DSU 제5.5조, 제5.6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등에서도 WTO 협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¹⁰⁸⁾ 반면 한-미국 FTA에서는 동 절차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NAFTA에서는 협의 절차가 실패한 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소집되는 자유무역위원회에서 주선, 조정 중개나 기타 분쟁해결절차가 채택된다.¹⁰⁹⁾ NAFTA 제20장상의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는 동 제도를 통해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주선과 중개의 경우 절차의 유연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협의에 비해서 자발적인 의사의 존재가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조정은 당사국들이 체결한 조약이나 계약서상의 조정조항에 근거하여 성립되며, 국제통상분쟁에서의 조정은 권위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전에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동 제도들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의 개시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수락가능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¹¹⁰⁾ 특히 조정의 경우는 정해진 절차규칙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효용성이 있다.¹¹¹⁾

3.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효용성

(1) 중재

중재란 분쟁발생 이전이나 또는 이후에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임시적 또는 상설적 중재재판소가 법의 존엄을 기초로 당

108) 한-칠레 FTA 제19.5조, 한-싱가포르 FTA 제20.5조, 한-EFTA FTA 제9.2조(1).

109) NAFTA 제2007조.

110) 최승환, “NAFTA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전계논문, p. 189.

111) 최승환,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 전계논문, p. 135.

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¹¹²⁾ 중재제도는 절차규칙의 정립, 중재위원의 선정, 재판정의 결정 등에 있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에 사법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가진다. WTO 체제에서도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으로서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¹¹³⁾

중재는 법의 엄격한 적용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한 판정이 기대되며,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며, 분쟁해결과정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재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의 담보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

(2) 패널심사

WTO 협정과 FTA는 패널심사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¹¹⁴⁾ 패널심사는 정해진 절차에 패널설치가 요청된 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요청서가 전달된 때에 중재패널이 설치되지만, 한-EFTA FTA에서는 의장이 임명되는 때에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심사는 당사국들이 사전에 합의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중재와 구별된다. 또한 패널위원의 선임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법재판과 차이가 있다.

NAFTA에서는 제20장 일반무역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는 중재패널 절차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는 제19장상의 패널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0장상의 분쟁해결절차는 패널판정의 구속력이 없고, 위임사항과 절차규칙의 채택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패널보고서의 채택시 당사자의 논평을 참작하게 하고 있으며, 이행 및 감시체제가 결여되어

112) 상계논문, p. 136.

113) WTO DSU 제25.1조.

114) 한-칠레 FTA 제19.6조, 한-싱가포르 FTA 제20.6조, 한-EFTA FTA 제9.4조.

있다는 점에서 제19장에 비해 화해지향적 분쟁해결의 성격이 강하다.

패널심사는 독립된 기구에 의해 공평한 심의절차가 강화되고 있으며, WTO의 경우는 상설상소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성, 공정성, 적정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통상규범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성과가 있으며, 또한 대상협정의 이행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당사국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 체제와 달리 역충의제를 도입함으로써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규범적 분쟁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일방적 무역보복조치를 방지하고 있으며, 당사국의 부당한 절차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4. 분쟁해결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과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의, 주선, 조정, 중개, 중재, 패널심사 등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련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당사국의 협상력(선진국/강대국인가? 또는 개도국/약소국인가?), 분쟁의 성질(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한가? 또는 국내산업피해가 심각한가?), 관련 규정의 적용결과(우리나라에게 유리한가? 또는 불리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주선, 조정, 중개, 중재, 패널심사 등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 상대국이 중국과 미국과 같은 강대국인 경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대등한 지위가 보장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개질휘발류 사건’¹¹⁵⁾에서 협상력이 열

115) 베네수엘라는 대기정화법(CAA)에 근거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휘발유규칙

악한 베네수엘라는 WTO 패널절차에 회부함으로써 베네수엘라산 휘발유에 대한 미국정부의 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최종판정을 받아내었고, 동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한 것은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의 효과적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쟁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FTA 및 WTO 협정상의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경우에는 FTA 또는 WTO 협정중 보다 유리한 협정에 따른 패널심사에 회부하도록 하고,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승소하는(zero-sum) 결과를 추구하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보다는 쌍방에게 모두 만족스러운(win-win) 결과를 추구하는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예컨대 농산품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식량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위생검역협정상의 관련 규정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위생검역 규제를 강화하되, 위생검역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완비한 위생검역협정이 적용되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한편 국내취약산업을 적절히 보호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급증에 따라 관련 국내산업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세이프가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까다로운 WTO 세이프가드협정보다

(Gasoline Rule)상의 환경기준이 수입휘발유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GATT 1994 제3조 4항(내국민대우)을 위반하였다고 미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1996년 ‘미국-개질휘발유 사건’에서 패널은 수입휘발유와 국내휘발유는 동종제품이며, ‘기준설정방법’(baseline establishment methods)하에서 수입휘발유는, 제품의 생산자와 연결된 개별기준에 의해 국내휘발유에 부여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호의적인 판매조건을 향유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국내휘발유보다 “불리하게”(less favorably) 대우받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U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Panel Report, WT/DS2/R, 29 Jan. 1996, para. 6.16; U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Appellate Body Report, WT/DS2/AB/R, 29 Apr. 1996., p. 29.

는 발동요건이 완화된 FTA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제 4 절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 현상과 시사점

1. FTA 분쟁에서 나타나는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

다자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제통상규범체제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출현은 국제법의 파편화(fragmentation)¹¹⁶⁾ 현상이 국제무역규범에게 까지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의 파편화 현상은 한편으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법적 규제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노출하고 배타적인 의무를 국가들에게 부과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WTO협정과 FTA와의 관계에서도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WTO 협정으로 대표되는 다자간 협정과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은 모두 WTO 설립협정 전문의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달성하는 것을 회원국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는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GATT 및 WTO 체제와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FTA 분쟁사례들은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현상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암시하고 있다.

116) 국제법체계가 냉전체제의 종식 이래 점차 국제규범이 분열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파편화(fragmentation)는 국제적 규제의 확산, 정치적 분열의 증가, 국제적 규제기구로서의 지역법정이 다수 증가함에 따른 국제법의 지역화,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해방, 국제적 규제의 특수화 등이 원인이다. 이러한 상태의 국제법은 더 이상 동질적인 체계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국제법의 분열과 파편화 현상은 다양한 법적 규제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노출하고 배타적인 의무를 국가들에게 부과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병선, “국제법의 가치지향적 연구방법에 대한 일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01., p. 126 이하 참조.

FTA의 체결은 소수의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문에서 자유화에 대한 양허가 가능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기가 용이하다. DDA 협상이 10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져 다자주의가 약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FTA 등 지역주의의 확산은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¹¹⁷⁾

캐나다-미국간 농산물 무역분쟁에 있어서 제소국인 미국의 주장은 캐나다가 NA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부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멕시코간 수수 빗자루 셰이프가드 분쟁에서도 미국은 선결적 항변으로 GATT 및 WTO 협정상의 의무에 근거한 법적분쟁에 있어서는 NAFTA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본안판단에서도 국내산업의 구분을 NAFTA 규정에 근거하여 취한 미국의 조치가 문제되었다. 미국-멕시코간 트럭운송서비스 분쟁에 있어서 쟁점은 WTO 협정보다 강화된 NAFTA 규정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캐나다간 NAFTA 연목분쟁 사건도 미국이 국내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로잉 마진 관행에 대해서 첫 번째 패널에서는 정당한 조치로 판정하였다.¹¹⁸⁾ 이외에도 상계관세부과조치와 관련하여서 패널은 미국이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송결정을 내렸으나, 미국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한 판정에 대해 긍정판정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멕시코-미국간 NAFTA HFCS 분쟁에서 멕시코는 WTO에 이미 제소된 사건이 NAFTA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17) 최승환, 전제서, p. 925 참조.

118) 하지만 2005년 세 번째 패널에서는 제로잉 관행이 허용가능한 조치라는 결정을 번복하였다. 반면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제로잉 마진 관행에 대해 일관되게 WTO 협정 위반임을 결정하였다.

당사국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WTO 협정과 NAFTA 사이에서 파편화를 초래한다.

2. FTA 분쟁에서 나타나는 국제무역규범의 조화

본문에서 살펴본 FTA 분쟁사례들에서 당사국들의 주장은 WTO 협정과 NAFTA 사이에서 파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패널의 결정은 파편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당 기구의 규범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방식이지만, 동 방법을 충실히 따를 경우에는 WTO 협정과 FTA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NAFTA 분쟁의 패널은 국제무역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였다. 캐나다-미국간 농산물 무역분쟁에 있어서 패널은 WTO 협정과 FTA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일반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선언함으로써, WTO 협정과 NAFTA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NAFTA가 GATT 및 WTO 협정상 의무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룰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 미국-멕시코간 수수 빗자루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관할권 부존재에 대한 선결적 항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기피하였다. 하지만, 본안상의 쟁점인 국내산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논의된 접근법을 언급함으로써 NAFTA의 해석에 있어 WTO 협정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미국-멕시코간 트럭운송서비스 분쟁에 있어서는 NAFTA에 규정의 해석에 의해 사건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동 결정에서 WTO 협정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개별 FTA가 상세한 발동요건에 근거하여 WTO 보다 심화된 양허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제도로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지 개별 FTA와 WTO 협정이 충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접근하기 힘든 분야에서는 접근을 자제함으로써 FTA와

WTO 협정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다. 미국-캐나다간 NAFTA 연목분쟁 사건의 경우도 NA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10여 차례 지속된 동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본안판단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화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미국간 NAFTA HFCS 분쟁에서 멕시코는 WTO에 이미 제소된 사건이 NAFTA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NAFTA 패널은 WTO 패널결정에 근거한 수정이행 조치에 대해서도 NAFTA 패널은 관할권을 가진다고 결정하였다. 즉 WTO 패널은 멕시코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판정을 내리는 것이고, 반면 NAFTA 결정은 멕시코의 조치가 멕시코의 관련 국내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재판관할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철폐하는데 있어서, NAFTA와 WTO 협정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적용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이처럼 FTA 분쟁에서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규범들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캐나다-미국간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에서 조약의 상호 충돌하는 경우, 일반국제법의 원칙에 의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패널의 결정은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최근 나타나는 FTA 증가현상은 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주의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자주의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국가들을 FTA를 통해 편입시킴으로써 해당국가의 무역장벽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실현, 무역자유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국가들이 타국의 높은 시장개방 효과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의 방지, WTO DDA 협상이 교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교착된 다자주의 체제의 보완 및 WTO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상의 쟁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WTO 체제에서도 FTA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FTA에 대한 활용도와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FTA가 비록 GATT 1994 제24조 및 GATS 제5조에서 허용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들 FTA는 본질적으로 WTO의 근본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과의 충돌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FTA 관련 WTO 규범의 불명확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충돌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FTA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는 시사점을 가진다.

본문에서는 현 국제사회 FTA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체결역사가 오래된 NAFTA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양국간 통상분쟁을 겪고 있는 WTO 회원국들은 이론상 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NAFTA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못지않게 NAFTA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NAFTA와 WTO 협정이 비슷한 시기에 출범하였음에도 이들 3개국에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사건을 보면, WTO 분쟁해결체제에 회부된 사건이 35건임에 반해 NAFTA 분쟁해결

체제에 회부된 사건은 총 138건이었다. NAFTA 분쟁해결제도가 원용된 사건 중 일반무역분쟁 사례 3건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분쟁 사례 135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NAFTA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건을 NA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분쟁의 경우 타국들은 명시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NAFTA의 경우는 양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판단, 절차의 간편성 및 신속성 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5건의 NAFTA 분쟁사례를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NAFTA 분쟁사례에서는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문제, 협정상의 의무 충돌 및 해결 문제, NAFTA 제도만의 고유한 특징, 분쟁해결방식에 있어서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과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의 병존 등이 특징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FTA 무역분쟁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관할권의 선택과 관련하여 NAFTA뿐만 아니라 기타 FTA에서도 선택적 관할제도를 도입하여 당사국들이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NAFTA에서는 제3국이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들 국가 모두가 모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NAFTA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NAFTA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양자 간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국 FTA에서도 양자간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미국의 정책방향이 나타난다. 한-미국 FTA에서는 여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달리 한-미국 간 체결된 모든 협정에 대한 분쟁해결제도로써 FTA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국의 선택에 따라 양자주의 체제에서 FTA 규정이외의 내용을 가지고도 분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향후 체결하는 FTA에서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정상의 의무충돌의 문제는 국제적 무역규범인 WTO 협정과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더 개방된 양허를 규정하고 있는 FTA와의 충돌시 발생하는 분쟁에서 나타난다. 관할권의 선택문제가 선결적 쟁점에 가까운 사항이라고 한다면, 협정상의 의무충돌 문제는 통상분쟁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특히 NAFTA 분쟁 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분쟁은 회원국의 국내법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에서도 많은 분쟁들이 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NAFTA 분쟁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은 협정상의 의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NAFTA 규정에 의한 독자적인 해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WTO 분쟁해결제도에 원용된 접근법 및 해석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또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등에 따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NAFTA의 경우는 회원국 간의 무역의존도가 높기에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NAFTA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NAFTA 규정의 우선적인 적용을 위한 것은 아니며,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제거를 통해 WTO 협정상의 의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FTA 분쟁해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상소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NAFTA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분쟁에서 사실상 재심에 해당하는 비상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 절차가 원용된 사건은 총 3건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 절차는 아주 제한된 요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에서 활용되

기는 용이하지 않으며, 실제에서도 통상적인 상소수단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비상이의신청위원회는 WTO 상소기구와 달리 법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적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제도는 여타의 FTA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는 환경, 노동, 위생 및 검역 등의 특별분야는 자체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향후 체결되는 FTA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FTA는 규범적분쟁해결방식과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FTA에서는 화해지향적인 분쟁해결방식이 WTO 분쟁해결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다. WTO 협정과 FTA에서 공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협의이외에도, 주선, 조정, 중개 등의 다양한 화해지향방식의 제도가 FTA에 도입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이 약소국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은 강대국에게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체제와 달리 FTA는 양국 또는 소수국가들 사이에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해 체결된 것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의 지향의 필요성이라는 국제통상분쟁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의 효용성도 분명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이 절차의 진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 또는 타 당사국에 의한 의도적인 지연절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FTA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와 조화문제이다. 지역주의의 활성화가 다자주의체제의 정착유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통상규범에서 지역주의의 활성화는 여러 가지 통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체 분쟁해결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NAFTA 체제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들도 이러한 파편화 현상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NAFTA 분쟁에서도 국제무역규범의 조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WTO 협정과 NAFTA의 상호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명시적인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캐나다-미국간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에서 조약이 상호충돌하는 경우 일반국제법의 원칙에 의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패널의 결정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NAFTA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FTA 무역분쟁사례연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주요 국가가 체결한 FTA의 실제적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체결할 FTA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양자간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NAFTA 체제의 분쟁사례는 미국의 통상분쟁에 접근하는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논리전개를 분석·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통상분쟁에서 FTA 무역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TA체제가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이념인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대한 단지 예외로써 존재·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WTO 체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NAFTA 체제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맞게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과 FTA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준하, “한국-미국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89호, 2009.
- 강준하, “FTA 이행체제 및 분쟁해결제도: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중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한·중 수교 2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2. 7. 12.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고찰」, 법무부, 2003.
- 금혜윤,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6 No.33, 2012. 9. 20.
- 김관호, “FTA와 국제투자분쟁: NAFTA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1호, 2006. 5.
- 김봉철, 「FTA: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 김승호, 「WTO 통상분쟁 관례해설(1)」, 법영사, 2007.
- 김양희·정준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 67호.
- 김인숙,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2007. 8.
- 김정수,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통상법적 고찰”,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2004. 8.
- 김현중,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21세기 북스, 1989.

참 고 문 헌

- 도현수,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분석-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
- 문 돈, “FTA의 분쟁해결기제”, 「진보평론」, 제23호, 2005년 봄호.
-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 배성호,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의 절차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4호, 2011. 12. 28.
- 서헌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분쟁해결 절차”, 「중재학회지」, 제3권, 1993.
- 손수석, “지역주의의 심화와 FTA의 선호 이유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09. 3.
- 심영규,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에 대한 국제경제법적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제5권.
- 안덕근, “WTO 체제에서의 FTA 분쟁해결제도,” 「통상법률」, 통권 제 49호, 2003. 2.
- 안덕근·신원균,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의 문제점 고찰: 미국-캐나다 간 연목(Softwood Lumber) 분쟁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104호, 2012. 4.
- 엄태암, “한미 FTA의 국방분야 영향 평가”, 「국제경제법연구」, 제5권.
- 오병선, “국제법의 가치지향적 연구방법에 대한 일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01.
- 정성조, 「NAFTA와 통상분쟁의 해결」, 한국법제연구원, 1993.
- 정수영, “FTA 분쟁해결기제의 실효성 연구 -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3판, 법영사, 2006.
- 강준하, 「WTO 농산물무역분쟁사례연구」, 법무부, 2003.
- _____, 「미국·EU 및 캐나다의 반덤핑사례분석」, 무역위원회, 2003.
- _____, 「미국·EU 및 캐나다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사 사례분석」, 무역위원회, 2004.
- _____, 「EU 보조금규칙 및 상계관세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 _____, “NAFTA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경희법학」, 제30권 제1호, 1995. 12.
- _____, “WTO 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합법성”, 「서울국제법연구」, 제3권 제1호, 1996. 5.
- _____,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로서의 중재”,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2호, 1996. 12.
- _____,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로서의 조정”, 「경희법학」, 제31권 제1호, 1996. 12.
- _____,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 「통상법률」, 통권 제13호, 1997. 2.
- _____, “한-중 마늘분쟁의 법과 정책”, 「통상법률」, 통권 제34호, 2000. 8.
- _____, “한중마늘분쟁 이후 한국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방향”, 「무역구제」, 통권 제40호, 2010. 10.
- _____, “한-중 FTA 상의 분쟁해결제도: 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2. 7.

참 고 문 헌

최승환·박현석, 「위생 및 검역규제에 따른 국제통상분쟁의 유형별 분석과 대응방안」, 국회외교통상위원회, 2003.

Choi, Seung Hwan, “The Process of Foreign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제법학회논총」, 제36권 2호, 1991. 12.

법무부, 「UR 분쟁해결제도 연구 - GATT 사례를 중심으로-」, 1994.

서울국제법연구원, 「한미 FTA 주요쟁점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송현백충현선생 5주기추모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2012. 5. 18.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2011. 6.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 2011. 1.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미 FTA 주요쟁점의 통상법적 고찰」, 2006 동계학술세미나자료집, 서울, 2006. 12. 16.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FTA」, 국제학술심포지움자료집, 서울, 2010. 12. 17.

한국법제연구원·중국인민대학,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한·중 수교 2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2012. 7. 12.

[외 국 문 헌]

Bossche, Peter Van den, “NGO Involvement in the WTO: A Comparative Perspective,” 1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717, 2008.

- Charnovitz, Steve,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17 *University of P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331, 1996.
- Charnovitz, Steve,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56 *Rutgers Law Review* 929, 2004.
- Frankel, Jeffery A., *Regional Trade Block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5.
- Henckels, Caroline, "Overcoming Jurisdictional Isolationism at the WTO-FTA Nexus: A Potential Approach for the WTO," 19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71, 2008.
- Holbein, James R., "Trade Agreements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the Western Hemisphere," 25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31, 1993.
- Huntington, D.S., "Settling Disputes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34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07, 1993.
- Jackson, J.H.,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MIT Press, 1990.
- _____, "Governmental Dispu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Proposal in the Context of GATT," 13 *Journal of World Trade Law* 1, Jan/Feb. 1979.
- Koh, Tommy & Li Lin (eds),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Highlights and Insight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2004.

참 고 문 헌

- Livshiz, David, "Public Participation in Disputes under Regional Trade Agreements: How Much is Too Much--The Case for a Limited Right of Intervention," 61 *New York University Annual Survey of American Law* 529, 2005.
- Marceau, G. and M. Stilwell, "Practical Suggestions for Amicus Curiae Briefs before WTO Adjudicating Bodies," 4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55, 2001.
- Martin, Stacie E., "Labor Obligations in the US-Chile Free Trade Agreement," 25 *Comparative Labor Law and Policy* 201, 2004.
- Matsushita, Mitsu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Law, Practice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Mo, John Shijian, "A 'New Haven' Solution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Rights in China's FTAs," 19 *Asia Pacific Law Review* 135, 2011.
- Norton, Joseph J. & Thomas L., Bloodworth (eds), *NAFTA and Beyond*, Martinus Nijhoff Publisher, 1995.
- Pan, Eric J., "Assessing The NAFTA Chapter 19 Binational Panel System: An Experiment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40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379, 1999.
- Pauwelyn, Joost, "Legal Avenues to "Multilateralize Regionalism": Beyond Article XXIV",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2007. 9. 10~12.
- Petersmann, E.U., "The Future of WTO: From Authoritarian Mercantilism to Multilevel Governance for the Benefit of Citizens?," 6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 Policy* 45, 2011.

- Rubin, Seymour J. & Dean C. Alexander (eds), *NAFTA and the Environ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 Shin, Susan H., "Comparison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or Trade Disputes and the Inter-American System for Human Rights Violations," 16 *New York International Law Review* 43, 2003.
- Skibola, Nicole,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Evolution of Fair Trade through the Free Trade System," 10 *U.C. Davis Law Journal* 183, 2010.
- Specht, Patrick,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s of WTO and NAFTA--Analysis and Comparison," 27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57, 1998.
- Taylor, Cherie O'Neal, "Dispute Resolution as a Catalyst for Economic Integration and an Agent for Deepening Integration: NAFTA and MERCOSUR?," 17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850, 1996-1997.
- Taylor, J.M.,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FTAA: An Apparent Melding of WTO, NAFTA and MERCOSUR Approaches," 15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393, 2002.
- Wang, Jiangyu, "China, India,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The Policy and Legal Dimensions," 10 *Singapore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269, 2006.
- Weiss, Marley, "Architectural Digest for International Trade and Labor Law: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and Minimum Criteria for Enforceable Social Clauses," *University of Maryland Working Paper No.1*, 2006.

참 고 문 헌

Chi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in Issues and Promoting Path of China-Korea FTA, International Symposium Materials, Xiamen, China, October 28, 2011.

Chi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e WTO Regime and Regional Trading Blocs: Laws and Practices of the Free Trade Agreements (RTAs) in China and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Materials, Tianjin, China, October 24, 2008.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Chi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FTAs in Asia and WTO, International Symposium Materials, Seoul, Korea, June 23, 2007.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Chi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Korea-China FTA: Seeking Ways to Reduce Trade Barriers for the Special Partnership, International Symposium Materials, Seoul, Korea, August 20, 2010.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Chi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Korea-China FTA in the World Trading System, International Symposium Materials, Seoul, Korea, June 16, 2012.

Korean Branch of ILA, Legal Issues and Strategies on FTA: Korea and the Chinese Neighbors, International Symposium Materials, Seoul, Korea, December 4, 2010.